

인명구조사(1 · 2급) 실기 평가표

2026. 9.



소방청
National Fire Agency **119**

Contents



I. 1급 인명구조사

- 1 실기평가 유의사항
- 2 인명구조사 1급 총괄 채점표
- 3 중량물(7.5kg) 들고 떠 있기
- 4 스킨장비 탈부착 후 인양작업
- 5 수상 인명구조
- 6 수중 인명구조
- 7 로프구조 (구조대원-1)
- 8 로프구조 (구조대원-2)
- 9 로프구조 (구조대원-3)
- 10 로프구조 (구조대원-4)
- 11 유해물질대응 I
- 12 유해물질대응 II
- 13 구조물 안정화 (Double`T 임시수직지주)
- 14 중량물 인양 및 이동

II. 2급 인명구조사(수난)

- 1 실기평가 유의사항
- 2 인명구조사 2급(수난) 총괄 채점표
- 3 기본역량평가(기초수영)
- 4 수중 인명구조
- 5 수상 인명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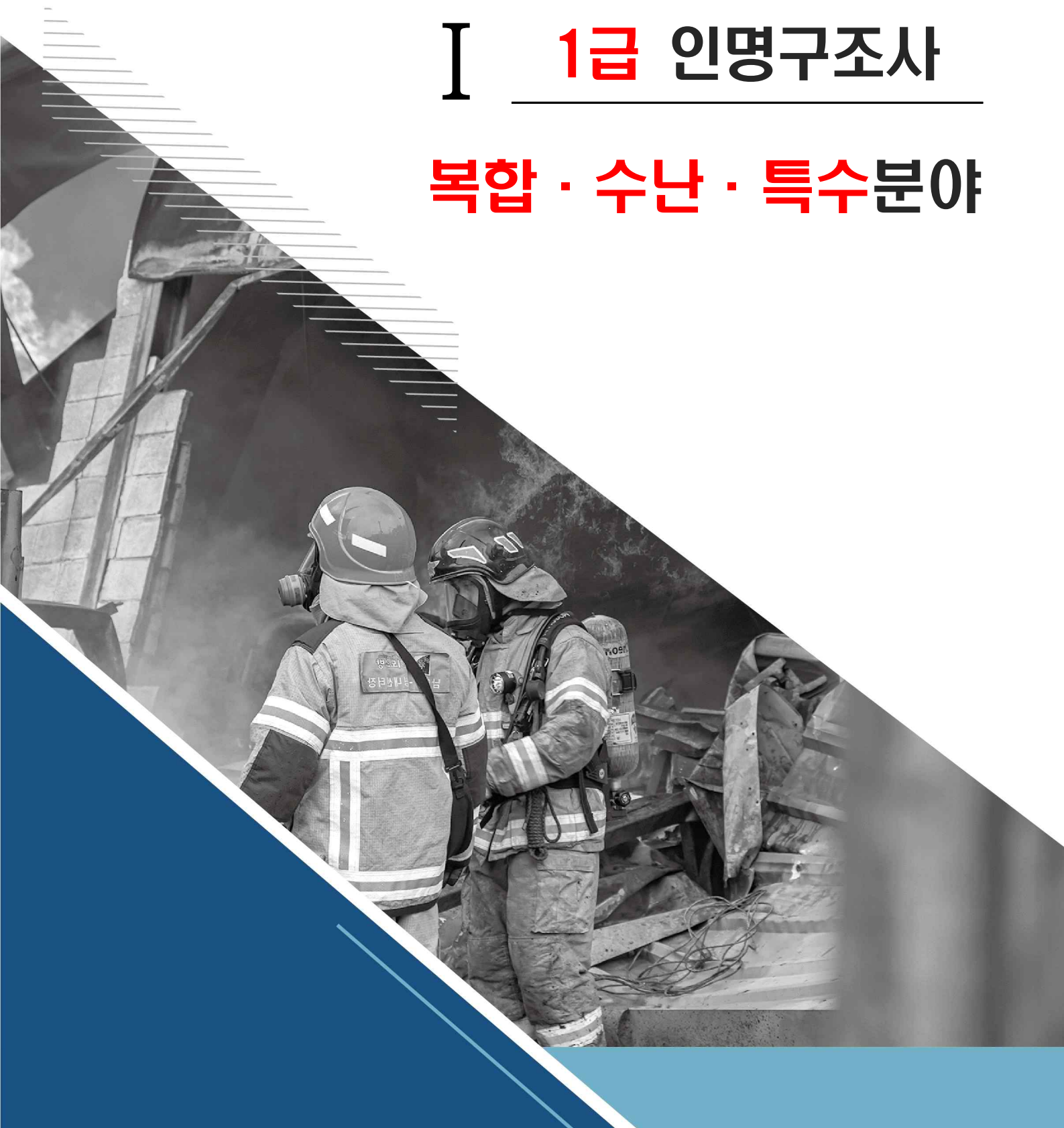
III. 2급 인명구조사(육상)

- 1 실기평가 유의사항
- 2 인명구조사 2급(수난) 총괄 채점표
- 3 기본역량평가(기초체력)
- 4 로프 하강 및 등반
- 5 수직구조
- 6 맨홀 인명구조
- 7 수평구조
- 8 교통사고 인명구조(에어백)
- 9 교통사고 인명구조(유압장비)



I **1급** 인명구조사

복합 · 수난 · 특수분야



인명구조사 1급 실기평가 유의사항

1. 유의사항

1. 평가관은 훈령에 의해 지정된 자로 하며, 평가표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평가의 원활한 운영과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평가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비공개로 관리하며, 평가 종료 후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한 자에 한하여 공개한다.
※ 평가관은 시험운영에 관한 서약서에 서명하여야 한다.(보안, 공정성, 언행, 행동, 안전 수칙 등)
2. 평가관은 평가 시작 전 안전점검 및 안전요원의 배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우려 시 즉시 평가를 중지하고 정위치 한다.
3. 평가 중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행동 및 안전에 관한 직접적인 사항 위반* 시에는 실격처리 한다.
* 응시자 본인의 안전, 평가 결과물, 응시자의 불안정한 행동 등으로 해설집의 내용을 준용하여 평가관이 판단한다.
4. 평가관 및 응시자는 본인 여부(응시자의 응시표 및 신분증)를 상호 확인해야 한다.
5. 시험 접수 후 응시자는 무단행동 금지 및 평가관(운영요원)의 통제에 따라야 하고, 시험에 방해되는 행동을 하는 자는 퇴장조치 할 수 있다.
6. 모든 평가는 평가관의 실시 지시에 복창 후 실시하고 완료 후 평가관에게 완료 보고 후 평가관의 지시에 따르며, 제한시간 내에 실시하는 평가는 평가관이 종료(정지)신호를 알리면 즉시 모든 행동을 정지하고 평가관의 통제에 따른다. (별도의 절차가 없는 경우에 한하며, 평가 종료 신호 후 점수에 영향을 끼치는 행동을 하는 경우 부정행위 실격처리)
7. 평가항목 중 세부항목 미수행하거나 부적절 또는 순서에 준하여 해당 항목을 실시하지 않고 다음 항목을 진행하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 “0” 점 (별도의 평가 기준이 없는 경우에 한함)
8. 평가가 시작되면 종료 전까지 재평가를 허용하지 않는다. (단, 충분한 장비점검을 하였을 예도 시험 도중 평가장비 결함 발생 시 평가관의 확인 후 재평가를 허용한다.)
9. 평가 시 실기평가장에서 준비하는 평가장비는 개인장비 사용을 제한한다. (단, 해설집에 개인장비 사용이 가능하다고 명시한 평가장비는 예외로 한다.)
10. 시험종료 후 시험장비는 원위치시켜야 한다.

2. 평가 진행방법

1. 인명구조사 1급 실기평가는 구조대원 2급의 심화과정과 특수사고 대비 4개 종목 9개 세부항목으로 한다.
(수난인명구조) 수상, 수중분야 기능을 보다 전문적이고 심화된 기법에서 평가한다.
(로프인명구조) 로프구조는 4명의 평가자 추천된 임무에 따라 요구되는 기능을 평가한다.
(도시탐색구조) 구조물안정화와 중량물계산을 실시하고 2명(4명)의 평가자를 추천 또는 지정된 임무에 따라 요구되는 기능을 평가한다.
(화학사고대응) ERG/KEY INFO GUIDE 활용법 등 소양능력을 평가하고 2명의 평가자를 추천된 임무에 따라 화학사고 기초대응과 매뉴얼 이해에 대한 지식과 기능을 평가한다.

구 분		평 가 종 목
인명구조사 1급 〈구조기술평가〉	수난구조	①중량물 들고 떠 있기 ②스킨탈부착 후 인양작업 ③수상인명구조 ④수중구조
	로프구조	⑤구조대원1 ~ 구조대원4 <추첨>
	화학구조	⑥유해물질 대응. I ⑦유해물질 대응. II <추첨>
	도시탐색	⑧구조물 안정화 ⑨중량물 인양 및 이동 <추첨 또는 지정>

2. 종목별 평가방법은 단계적 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세부평가항목 진행은 평가관의 지시에 의한다.
3. 평가 시작 전 장비점검 등 평가 준비를 위한 시간 약 5분을 응시자에게 제공한다.
4. 감점합계가 60점 초과 및 제한시간을 초과한 경우 시험을 중단한다.
5. 최종합격은 평가종목별 40점 이상에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하여야 한다.
6. 각 진행단계의 감점이 해당 진행단계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진행단계 점수는 0점 처리 (단, 공통사항에 감점기준 기재된 경우 별도 감점 적용)
7. 손목 시계(전자) 지참은 가능(단, 참고용에 한함)하되, 평가 제한시간은 평가관이 소지한 초시계 기준으로 한다.

인명구조사 1급 총괄 채점표

1. 응시자 인적사항

응시번호		소 속		직 급		성 명	
------	--	-----	--	-----	--	-----	--

2. 평가항목 및 점수

구 분	평 가 종 목		종 점 수	평 점 수	비 고
구 조 기 술 평 가	중량물(7.5kg) 들고 떠 있기		100		
	스킨탈부착 후 인양작업		100		
	수상 인명구조		100		
	수중 인명구조		100		
	로프 인명구조	로프 인명구조 <구조대원-1> [하강 · 들것 상승 시 지형별 상황대처]	100		구조대원 1~4 중 역할 추첨
		로프 인명구조 <구조대원-2> [하강 · 유도로프 운용 · 등반 기능]			
		로프 인명구조 <구조대원-3> [지휘 · 안전관리 · 보조로프 담김장치 운용]			
		로프 인명구조 <구조대원-4> [주로프 담김장치 운용]			
	유해물질 대응. I		100		유해물질 종류 추첨
	유해물질 대응. II		100		누출차잔 장비 종류 추첨
	구조물 안정화 [Double "T" 수직지주]		100		
	중량물 인양 및 이동		100		역할 추첨 또는 지정

최 종 평 가 결 과

합격		불합격		900	총점	평균

인명구조사 1급 실기 종목별 평가표

○ 중량물(7.5kg) 들고 떠 있기

(기준시간 : 1분)

응시번호		성 명	(서명)	평가관	(서명)
------	--	-----	------	-----	------

○ 준비물 및 평가 장비

- 준 비 물 : 수영복(전신 및 부력을 가진 수영복 제외), 수영모
- 평가장비 : 중량물(7.5kg 재질별 허용여부 해설집 참고), 초시계, 호각, 레스큐캔 또는 레스큐튜브

진행단계	평 가 항 목	시간 정지	평가 점수																																															
중량물 (7.5kg)	중량물(7.5kg)을 들고 1분간 떠 있어야 한다. * 중량물 파지는 한 손 또는 두 손 모두를 허용하며, 가슴 등 신체에 의탁 가능 * 다리동작은 엇갈려차기, 평영발차기, 가위차기 등 형태 제한 없음 * 중량물을 수영복에 삽입하는 등 부정한 행동을 한 경우 실격 〈적용기준〉 평가 중 손으로 벽을 잡거나 중량물을 놓은 시간 * 45초 ~ 60초(초당 4점 적용) <table><tr><td>45초</td><td>46초</td><td>47초</td><td>48초</td><td>49초</td><td>50초</td><td>51초</td><td>52초</td><td>53초</td><td>54초</td><td>55초</td><td>56초</td><td>57초</td><td>58초</td><td>59초</td><td>60초</td></tr><tr><td>40점</td><td>44점</td><td>48점</td><td>52점</td><td>56점</td><td>60점</td><td>64점</td><td>68점</td><td>72점</td><td>76점</td><td>80점</td><td>84점</td><td>88점</td><td>92점</td><td>96점</td><td>100점</td></tr><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table> * 소수점 이하는 절삭 - 예) 46.99초(46초 간주 / 44점 적용)	45초	46초	47초	48초	49초	50초	51초	52초	53초	54초	55초	56초	57초	58초	59초	60초	40점	44점	48점	52점	56점	60점	64점	68점	72점	76점	80점	84점	88점	92점	96점	100점	☐	☐	☐	☐	☐	☐	☐	☐	☐	☐	☐	☐	☐	☐	☐	100	
	45초	46초	47초	48초	49초	50초	51초	52초	53초	54초	55초	56초	57초	58초	59초	60초																																		
	40점	44점	48점	52점	56점	60점	64점	68점	72점	76점	80점	84점	88점	92점	96점	100점																																		
	☐	☐	☐	☐	☐	☐	☐	☐	☐	☐	☐	☐	☐	☐	☐																																			
	1. 벽면이나 지지물에 신체가 접촉하는 경우 시간종료	체크	시간																																															
	2. 구강(입술) 이상이 수면에 잠기는 경우 시간종료	체크	시간																																															
	3. 귀가 수면에 닿는 경우 시간종료	체크	시간																																															
4. 몸통회전(90° 이상) 또는 최초 시작지점에서 2m 이상 이동하는 경우, 몸이 누운 자세를 취한 경우 즉시 시간 종료	체크	시간																																																
5. 응시자와의 신체접촉 등으로 평가를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간종료	체크	시간																																																
6. 평가관이 위험하다고 판단 시 평가종료 = 시간종료	체크	시간																																																

평 가 결 과			100	
기준시간 : 1분	합 격	불합격		
최종 평가기록 : 분 초				

인명구조사 1급 실기 종목별 평가표

○ 스킨장비 탈부착 후 인양작업

(제한시간 : 3분)

응시번호	성 명	(서명)	평가관	(서명)
------	-----	------	-----	------

○ 준비물 및 평가 장비

- 준 비 물 : 수영복(전신 및 부력을 가진 수영복 제외), 수영모, 마스크(MASK), 오리발
- 평가장비 : 레스큐튜브, 웨이트(납), 로프(20m), 인양물(매듭용), 홀라후프(장애물)

진행단계	평 가 항 목	감점 사항	평가 점수
개요	스킨장비(수경, 오리발) 착용한 상태에서 허리굽혀 들어가기 방법으로 5m 바닥으로 하강하여 스킨장비를 벗어놓고 상승한다. 수면에서 호흡 후 다리부터 들어가기 방법으로 재 하강하여 스킨장비를 착용 후 수면으로 상승한다. 다시 수면에서 호흡하고 로프를 휴대하여 하강한 후 후프(장애물)를 통과하고 인양물에 매듭을 실시한 후 상승한다. <스킨장비 착용한 상태에서 수면에서 벽을 잡고 대기 → 응시자가 평가관에게 수신호 → 하강(허리 굽혀 들어가기) → 스킨장비 벗어놓음 → 상승 → 호흡 → 하강(다리부터 들어가기) → 스킨장비착용 → 상승 → 호흡 → 하강(허리굽혀 들어가기) → 장애물(후프)통과 → 인양물 매듭 → 상승 → 평가관에게 완료 수신호>		
장비탈착 (25)	1. 스킨장비를 착용한 상태에서 준비완료 수신호 후 허리굽혀 들어가기 방법으로 바닥으로 하강 후 바닥에 놓인 웨이트에 스킨장비(오리발→마스크)를 벗어 놓고 상승		
	- 한번에 입수하지 못하거나 허리굽혀 들어가기 자세에서 오리발을 물 밖에서 차는 경우 감점		-15
	- 스킨장비를 벗지 못하고 상승하는 경우 실격 - 상승 중 한 손을 들지 않거나 수면을 확인하지 않을 경우 감점		-10
장비착용 (40)	2. 상승 후 호흡(제한없음)을 실시하고 다리부터 들어가기 방법으로 바닥으로 하강하여 마스크착용 후 마스크 물빼기를 실시하고 오리발착용 후 상승		
	- 한번에 입수하지 못하거나 다리부터 들어가기 자세에서 손이 물 밖으로 나오는 경우 감점 * 수중 바닥에 닿기 전에 허리굽혀 들어가는 자세로 변경하지 않은 경우 감점		-15
	- 마스크착용 후 마스크 물빼기 및 오리발착용이 순서에 맞지 않은 경우 감점 * 오리발 뒷부분을 사전에 접어놓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시하는 경우 감점		-15
	- 오리발 뒷부분이 접힌 상태로 착용한 경우, 상승 중 착용하는 경우, 마스크 물빼기 미완료 하는 경우 감점		-10
	- 상승 중 한 손을 들지 않거나 수면을 확인하지 않을 경우 감점 - 호흡 등의 문제로 마스크나 오리발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상승하는 경우 실격		
인양작업 (35)	3. 상승 후 호흡(제한없음)을 실시하고 로프를 휴대하여 허리굽혀 들어가기 방법으로 바닥으로 하강 후 장애물(후프)을 통과하고 인양물에 매듭(말뚝+웁매듭) 후 상승하여 완료신호(OK수신호)		
	- 한번에 입수하지 못하거나 허리굽혀 들어가기 자세에서 오리발을 물 밖에서 차는 경우 감점		-15
	- 신체가 휴대한 로프에 한바퀴 이상 감긴 경우 감점		
	- 장애물(후프) 통과 시 신체가 장애물에 닿는 경우 감점(매듭 중 닿는 경우 감점 아님)		-10
	- 매듭(말뚝+웁매듭)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해설집 참조) 실격 (매듭 부적절시 감점)		
	- 장애물(후프) 통과를 하지 않는 경우 실격 - 상승 중 한 손을 들지 않거나 수면을 확인하지 않을 경우 감점		-10
공통사항	- 로프의 반대쪽 끝단이 물속으로 들어간 경우 해당 진행 단계를 0점 처리(35점 감점)		
	※ 평가진행 중 수영장 벽면이나 데크를 잡거나 기대는 경우 실격		
	※ 평가 중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행동 및 안전에 관한 사항 위반 시 실격		
	※ 장비에 이상이 생겨서 더 이상 진행이 불가능 할 경우 실격 ※ 마스크나 오리발을 착용한 이후 작업이 완료 되기 전까지 신체에서 이탈되는 경우 실격		

평 가 결 과			100	
제한시간 : 3분		합 격	불합격	
최종 평가기록 :		분 초		

인명구조사 1급 실기 종목별 평가표

○ 수상 인명구조

(항목별 제한시간 부여)

응시번호	성 명	(서명)	평가관	(서명)
------	-----	------	-----	------

○ 준비물 및 평가 장비

- 준 비 물 : (구조수영) 습식잠수복(2mm 이상, 튜닉·반팔 제외), 급류구조자켓, 오리발(55cm 이하), 수난헬멧, 장갑, 슈즈 / (가라앉은 구조대상자) 수영복, 수영모, 수경(MASK)
- 평가 장비 : 수난용 마네킹(약25kg)

진행단계	평 가 항 목				감점 사항	평가 점수																		
평가 방법	구조수영과 가라앉은 구조대상자 인양구조를 평가하며 원활한 평가 진행을 위해 항목별 개별평가로 진행할 수 있다. <해당 종목 평가순서 * 제한 없음> * 예) 종랑물 들고 떠 있기 → 구조대상자 인양구조 → 스캔탈부착 후 인양작업 → 급류구조(평가 운영에 맞게 조정 가능)																							
구조 수영 (50)	1. 급류구조장비 착용한 상태에서 시작 → 장비의 이상 유무 점검 → 입수지점 안전확인 → 평가관에게 신호(OK) → 평가관 출발신호(호각) → 입수(얕은 물 들어가기) → 수면 이동 → 출발지점(100m) 이동 <제한시간> 100초				-50																			
	<기준영법> * 머리들고 시선을 전방으로 향한 상태에서 자유형(크롤영법) <기준시간> 100초																							
	<table><tr><td>80초 이하</td><td>81초~85초</td><td>86초~90초</td><td>91초~95초</td><td>96초~100초</td><td>101초 이상</td></tr><tr><td>50점</td><td>40점</td><td>30점</td><td>20점</td><td>10점</td><td>실격</td></tr><tr><td>☐</td><td>☐</td><td>☐</td><td>☐</td><td>☐</td><td>☐</td></tr></table>						80초 이하	81초~85초	86초~90초	91초~95초	96초~100초	101초 이상	50점	40점	30점	20점	10점	실격	☐	☐	☐	☐	☐	☐
	80초 이하	81초~85초	86초~90초	91초~95초			96초~100초	101초 이상																
	50점	40점	30점	20점			10점	실격																
☐	☐	☐	☐	☐	☐																			
* 소수점 이하는 절삭 - 예) 100.99초(100초 간주 / 10점 적용) * 수면 이동 중 벽면(방향 전환 시는 제외) 또는 라인을 잡거나 멈춰선 경우 실격 * 자유형(크롤영법) 외 영법으로 이동할 경우 실격																								
- 시선을 전방으로 주시하지 않는 경우 감점(-20점)																								
<제한시간 : 100초>		평가시간 :		초	시간초과	불합격 ☐																		
가라앉은 구조대상자 인양구조 (50)	2. 입수지점 안전확인 → 입수(다리벌려 들어가기) → 트러젠 영법 3회 이상 → 수심 5m 아래의 구조대상자 인양(허리굽혀 들어가기) → 구조대상자 수상운반(한·두 거드랑이 끌기 등, 출발지점까지) <제한시간> 60초 * 평가 운영 시 출발지점에서 3m 지점에 라인 설치하여 위치표시																							
	- 다리벌려 입수자세 시 구강이 잠긴 경우 감점					-5																		
	- 접근방법(트러젠 영법 3회 이상 하지 않을 시 감점)					-5																		
	- 응시자 및 마네킹 구강이 물에 잠기는 경우 매회 20점 감점(항목점수 40점까지 감점)				횡수	-20																		
	- 인양 중 마네킹이 바닥으로 추락하는 경우 실격																							
	- 출발지점까지 이동(응시자 신체가 데크에 닿을 때까지) 중 마네킹이 바닥으로 추락하는 경우 실격																							
	- 응시자 및 마네킹 구강이 잠긴 상태에서 3초 이상 이동 시 실격																							
	- 마네킹을 수직인양 하지 않는 경우(응시자 기준 3m 지점 안쪽으로 인양) 실격																							
<제한시간 : 60초>		평가시간 :		초	시간초과	불합격 ☐																		
공통사항	※ 평가 중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행동 및 안전에 관한 사항 위반 시 실격																							

평 가 결 과	100	
제한시간 : 항목별 제한시간 부여	합 격	불합격

인명구조사 1급 실기 종목별 평가표

○ 수중인명구조

(제한시간 : 해당 없음)

응시번호	성명	(서명)	평가관	(서명)
------	----	------	-----	------

○ 준비물 및 평가 장비

- 준비물 : 잠수장비세트(형식 제한없음), 마스크(백업마스크는 선택 사항), 오리발, 건식잠수복(내피포함), 건식장갑(내피포함), 잠수모, 완전폐쇄형 SMB 스펙(1m 이상, 슈트포켓 휴대, 백업장비 소지 가능), 다이브 컴퓨터(손목 착용형)
- 평가장비 : 수상용 마네킹, 로프(5m, 8m), 앵커용 웨이트 2개(6kg)

평가결과			100	
제한시간 : 해당 없음		합격	불합격	

진행단계	평가항목	감점사항	평가점수
입수 (5)	1. 평가관 입수신호 → 부력확보 → 입수지점 확인 → 서서입수 → 장비이상유무확인 → OK수신호 - 서서입수 동작이 부적절하거나 입수 후 BC양성부력 미흡으로 구강(호흡기)이 잠기는 경우 감점 - 순서에 맞지 않게 진행한 경우 감점(OK수신호 포함) - 형식적으로 입수지점 확인 또는 장비 점검한 경우 감점	-5	
하강 (15)	2. 평가관 하강신호 → 평가자의 하강신호 → 하강라인을 보며 수평자세로 하강 → 평가관의 4m정지 신호 → OK수신호 → 20초 정지 → 평가관 종료신호 → OK수신호 - 수평자세(20° 이내), 부력(상하±50cm), 정지 자세 전후좌우 1m 이동 시 감점 - 바로 하강을 하지 못하거나 하강 중 상승 후 재하강하는 경우 감점 - 4m 정지를 못하고 신체나 장비가 바닥에 닿을 경우 감점 - 하강라인을 보지 않거나 하강라인을 잡는 경우 감점 - 하강라인 1m 이상 이탈 하거나 수면 상승한 경우 감점 - 순서에 맞지 않게 진행한 경우 감점(OK수신호 포함)	-15	
기본기술 (30)	3. 4m에서 평가관 신호→주 호흡기 물빼기→마스크 물빼기→OK수신호 / 4m에서 평가관 신호 →프로그 킥→백워드 킥→OK수신호 - 수중킥 및 이동자세 또는 균형 부적절한 경우 감점 - 수평자세(20° 이내), 부력(상하±50cm), 정지 자세 전후좌우 1m 이동 시 감점 - 주 호흡기에서 자유방출(프리플로우)이 발생하는 경우 감점 - 마스크 안에 물을 완전히 채우지 않거나 호흡방출 3회 후 물빼기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감점 - 마스크 물빼기 후 물이 완전하게 빠지지 않은 경우 감점 - 순서에 맞지 않게 진행한 경우(OK수신호 포함) 감점	-20 -10	
수색 (10)	4. 2인 1조 책-스테이 수색 <평가관 실시신호 → 마스크 벗음 → 수색실시 → 구조대상자 발견 → 마스크 착용> - 수평자세(20도이내) 부력(상하±50cm) 및 균형 미유지 시 감점 - 수색 도중 손과 마스크를 제외한 신체 및 장비가 바닥에 닿는 경우 감점 - 책스테이 수색방법 부적절 감점(상호 수신호, 개별행동, 로프를 20cm이상 띄우거나 끌고가는 경우 등) - 마스크 착용 시 물빼기 후 물이 완전하게 빠지지 않은 경우 감점 - 앵커 이동 시 앵커가 바닥에 끌리는 경우 감점 - 마스크 분실 또는 마스크가 원인이 되어 더 이상 평가 진행이 안 되는 경우 실격	-10	
수면표시 (20)	5. 평가관 신호 → SMB 준비 → 수면확인 → SMB 구강 공기주입 → 스펙 고임확인 → SMB 전개 → 더블앰더 고정 → OK수신호 - 수평자세(20도 이내) 부력(상하±50cm) 및 균형 미유지 시 감점 - 정지자세 전후좌우 1m 이동 시 감점 - 순서에 맞지 않게 진행한 경우(OK수신호 포함) 감점 - SMB전개과정 부적절 또는 수면 SMB에 공기량 3분의 2 이하 주입된 경우 감점	-10 -10	
상승 (20)	6. 평가관 상승 신호 → 평가자 상승 수신호 → 스펙 감으며 상승 → 2M 안전정지(20초) 및 더블앰더 고정 → SMB 스펙 수심 확인 → 평가관 상승 신호 → 평가자 상승 수신호 → 스펙 감으며 수면상승 후 부력확보 후 OK수신호 - 수평자세(20도 이내) 및 안전정지 시 부력(상하±50cm) 및 균형 미유지 시 감점 - SMB운용 부적절 및 상승라인을 중심으로 1m 간격 유지하지 않을 경우 감점 - 4m 상승 출발부터 SMB운용 부적절 및 2m 안전정지 시 스펙 수심 2m 유지하지 못한 경우 감점 - 상승 후 부력조절기(BC)에 부력확보 미실시한 경우 감점 - 순서에 맞지 않게 진행한 경우(OK수신호 포함) 감점 - 수면상승 시 분당 9M 속도 초과하여 급상승 하는 경우 실격	-10 -10	
공통사항	※각 항목의 감점이 항목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 항목 점수 0점 ※ 평가 중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행동 및 안전에 관한 사항 위반 시 실격		

평가결과			100	
제한시간 : 해당 없음		합격	불합격	

인명구조사 1급 실기 종목별 평가표

○ 로프구조(구조대원-1) 「하강·들것 등반시 지형별 상황대처」

응시번호 성명 (서명) 평가관 (서명)

○ 준비물 및 평가 장비

- 준비물 : 기동복(활동복), 기동화(산악용 구조화), 안전벨트(카우스 테일이 포함된 상·하 일체형), 퍼셀 푸르직(2), 구조장갑, 구조헬멧
- 평가장비 : 자동확보장비, 이동식 추락방지장비, 등강기, 더블도르래(2), 확보판, 카라비너(12), 코 드슬링(7~8mm×10m), 안전로프(11mm×4m)

※ 평가 전 이동식 추락방지장비(아삼), 자동확보장비(아이디), 로프를 제외한 모든 장비는 장비걸이에 착용한 상태로 준비한다.

진행단계	평가항목	감점 사항	평가 점수
준비단계 (15)	1. “현장안전확인” → 안전로프 설치(확보물에 고정매듭+되감기매듭, 끝줄에 이중웁매듭) → 퍼셀 푸르직으로 자기확보(푸르직 매듭 3회) → 대원2의 1차 로프고정 확인 후 로프두척(끝줄에 이중웁매듭) → 삼각대에 카라비너 2개 연결 및 하강로프 2줄 각각 통과 → “실시완료” 복창 - 매듭 부적절 시(해설집 참고) 감점 - 삼각대에 걸착한 카라비너의 방향이 부적절한 경우(해설집 참고) 감점 및 경고 미조치 시 실격 - 대원2의 하강로프 1차 고정완료 신호 시 로프두척 여부 / 로프 끝에 이중웁매듭 미실시 또는 잔여길이 부적절(10~30cm 범위 이탈) 시 감점 - 개인안전로프(퍼셀푸르직 확보)를 복부·가슴 등 D링 외 확보하는 경우 실격 - 개인안전로프(퍼셀푸르직 확보)를 안전구역을 벗어나 확보를 실시한 경우 실격 〈제한시간 : 3분〉 평가시간 : 분 초 시간초과 불합격 □	-15	
진입단계 (15)	2. 대원3의 지시에 자동확보장비 결합 및 하강 <대원3의 지시 후 완료보고까지 측정> * 자동확보장비 결합 및 이동식 추락방지장비 결합 → 자기확보해제 → 하강전보고 → 하강 → 장비해제 → 완료보고 - “하강준비 끝” 복창 미실시 또는 절차에 맞지 않은 진행(감점) - 출발 시 모서리에 손 끼임 또는 하강 중 발 이외의 신체 일부가 벽에 부딪힐 경우 감점 - 자동확보장비 및 이동식 추락방지장비에 로프를 거꾸로 설치할 경우(감점) 이를 수정하지 않고 계속 진행할 경우 실격 - 이동식 추락방지장비의 충격흡수 부분이 두 팔 사이를 통과하는 위치에 있지 않은 경우 감점 및 경고 미조치 시 실격 - 하강 중 이동식 추락방지장비의 잠금이 걸리는 경우 감점 〈제한시간 : 2분〉 평가시간 : 분 초 시간초과 불합격 □	-5 -10	
설치단계 (40)	3. 하강 된 들것의 로프(주·보조·유도로프)를 대원2와 해제 → 휴대용 당김장치 설치 (들것하단 삼각줄에 4:1이상) → “로프고임상태 확인” 복창 → 주·보조로프에 들것 걸착 → 자동확보장비 및 이동식 추락방지장비로 2중 안전확보 실시 → “실시완료” 복창 - 들것하단 삼각줄에 휴대용 당김장치 설치 시 4:1 이상 힘의 비율이 맞지 않을 시 감점 - 휴대용 당김장치가 반 바퀴 이상 꼬이거나 로프 끝에 이중웁매듭 안했을 시 감점 - “실시완료” 전 휴대용 당김장치에 절반매듭 2회 이상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점 - 휴대용 당김장치를 만들지 못하거나 들것 상단에 연결할 경우 실격 - 자동확보장비 → 주로프, 이동식 추락방지장비 → 보조로프 부적절한 경우(해설집 참고) 감점 및 경고 미조치 시 실격 - 자동확보장비 및 이동식 추락방지장비에 로프를 거꾸로 설치할 경우 감점 및 경고 미조치 시 실격 - 현수점에서 연결점까지 주 및 보조로프가 반바퀴 이상 서로 꼬여 연결된 경우 감점 - 확보판 장비결합상태 불량 시 감점 〈제한시간 : 3분〉 평가시간 : 분 초 시간초과 불합격 □	-15 -15 -10	
구조단계 (30)	4. 대원2와 들것 수평유지 및 대원3에게 로프당김 수신호와 복창 → 상부 가장자리에서 7m 아래 지점 정지 <평가시간 미적용> 5. 오버행·맨홀 통과 기술을 실시 <평가시간 적용 : 4분> 6. 최종 인양시점에서 들것을 대원3과 협력하여 안전지역으로 이동 <평가시간 미적용> - 들것의 상하좌우 수평유지(인명구조사 2급 기준) 불량한 상태로 진행 시 감점 - 수신호와 복창(로프 올라, 로프 내려, 정지) 미실시 시 감점 - 들것 상승 시 들것이 강하게 충격을 받거나 필요 이상의 흔들림이 발생 시 감점 - 들것 인양 완료 시까지 구조대원이 벽을 적절히 밀어내지 못하고 계속 미끄러지는 경우(감점) - 오버행 통과 시 1회 이상 등반(이동)하지 않고 들것 조작 시 감점 - 오버행/맨홀 통과 시 들것이 벽에 강하게 부딪히는 경우 감점 - 임무수행 중 구조대상자를 차거나 밟을 경우 감점 - 오버행/맨홀 통과 시 휴대용 당김장치 조작 미흡 및 당김줄 놓치는 경우 감점 - 들것 수직불가 또는 수평 복원 시 들것 수평상태(2급 기준) 불량 경우 감점 - 수직 전환 완료 시 휴대용 당김장치에 절반매듭 2회 이상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점 - 이동식 추락방지장비가 허리높이 아래에 있거나 충격흡수 부분이 두 팔 사이를 통과하는 위치에 있지 않은 경우 감점 및 경고 미조치 시 실격 - 들것 조절기술(맨홀/오버행) 중 하나라도 구사하지 못할 경우 실격 〈제한시간 : 4분〉 평가시간 : 분 초 시간초과 불합격 □	-10 -20	
공통사항	* 안전지역에서 장비 떨어트림 및 모든 평가항목 수행 시 카라비너 미잠금(총점에서 1개당 5점 감점) * 위험지역에서 장비 추락 시 해당 장비 사용불가(총점에서 1개당 20점 감점, 임무수행 불가 시 실격) * 퍼셀푸르직이 지정된 위험지역에서 허리 밑으로 늘어지는 경우 경고 및 감점, 미조치시 실격(전행 단계 별 10점 감점) * 타 응시자에게 감점 요인을 제공했을 때 (매회 10점 감점) * 로프를 밟거나 발로 미는 행위 (매회 5점 감점) * 타 응시자에게 기술적 요소를 알려주거나 받는 등 유사행위를 했을 경우(최종 득점점수에서 회당 감점 30점) * 평가 진행이 안 되거나 단계별 진행 중 제한시간을 초과할 경우 실격 * 평가 중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행동 및 안전에 관한 사항 위반 시 실격	개수 개수 횡수 횡수 횡수	
평가결과			100
평가시간 : 항목별 제한시간 부여			합격 불합격

인명구조사 1급 실기 종목별 평가표

○ 로프구조(구조대원-2)

「하강 · 유도로프 운용 · 등반기능」

응시번호	성명	(서명)	평가관	(서명)
------	----	------	-----	------

○ 준비물 및 평가 장비

- 준비물 : 기동복(활동복), 기동화(산악용 구조화), 안전벨트(가슴등반기 · 카우스 테일이 포함된 상 · 하 일체형 안전벨트), 구조장갑, 구조헬멧, 퍼셀푸르직(2)
- 평가장비 : 로프(11mm×40m), 자동확보장비, 이동식추락방지장비, 등강기, 카라비너(4), 안전로프(11mm×4m)
※평가 전 아삽, 아이디, 로프를 제외한 모든장비는 장비걸이에 착용한 상태로 준비한다.

진행단계	평가항목	감점사항	평가점수
준비단계 (15)	1. “현장안전확인” → 안전로프 설치(확보물에 고정매듭+되감기매듭, 끝줄에 이중웁매듭) → 퍼셀푸르직으로 자기확보(푸르직 매듭 3회) → 하강로프 확보물에 1차 고정(말뚝매듭) → 대원1에게 완료 신호 → 대원1의 로프투착 후 2차 고정(말뚝 + 웁매듭) → “실시완료” - 1차 고정 후 대원1에게 완료 신호 미실시, 매듭 부적절 시 감점 - 개인안전로프(퍼셀푸르직 확보)를 복부·가슴·등 D링 외 확보하는 경우 실격 - 개인안전로프, 안전구역을 벗어나 퍼셀푸르직 확보를 실시한 경우 실격 <제한시간 : 3분> 평가시간 : 분 초 시간초과 불합격 □	-15	
진입단계 (15)	2. 대원3의 지시에 자동확보장비 결합 및 하강 <대원3의 지시 후 완료보고까지 측정> * 자동확보장비 결합 및 이동식추락방지장비 결합 → 자기확보해제 → 하강전보고 → 하강 → 장비해제 → 완료보고 - “하강준비 끝” 복창 미실시 또는 절차에 맞지 않은 진행(감점) - 출발 시 모서리에 손 끼임 또는 하강 중 발 이외의 신체 일부가 벽에 부딪힐 경우 감점 - 자동확보장비 및 이동식 추락방지장비에 로프를 개구로 설치할 경우(감점) 이를 수정하지 않고 계속 진행할 경우 실격 - 이동식 추락방지장비의 충격흡수 부분이 두 팔 사이를 통과하는 위치에 있지 않은 경우 감점 및 경고, 미조치 시 실격 - 하강 중 이동식 추락방지장비의 잠금이 걸리는 경우 감점 <제한시간 : 2분> 평가시간 : 분 초 시간초과 불합격 □	-5 -10	
설치 및 구조단계 (40)	3. 들것 하강 시 유도로프 조작 <평가시간 미적용> 4. 하강 된 들것의 로프(주보조유도로프)를 대원1과 해제, 주로프(중간8자매듭), 주로프 끝줄(이중웁매듭), 보조로프(나비매듭), 보조로프 끝줄(이중웁매듭), 들것 유도로프(분할고정매듭)설치 5. 대원1과 들것 수평유지 / 들것 인양 시 유도로프 조작하여 들것 안정 <평가시간 미적용> - 들것 인양 또는 하강 시 유도로프 조작이 미흡하여 들것이 강하게 충격을 받을 경우 감점 - 매듭의 형태, 크기, 길이 등 정확하지 않거나 부적절한 경우 감점 - 들것의 상 · 하 · 좌 · 우 수평유지(인명구조사 2급 기준) 불량한 상태로 진행 시 감점 <제한시간 : 3분> 평가시간 : 분 초 시간초과 불합격 □	-10 -20 -10	
철수단계 (30)	6. 대원3의 등반장비결합 지시 → “장비결합실시” → 등반장비 결합(가슴등강기, 등강기, 퍼셀푸르직), 이동식추락방지장비 결합 → “등반준비 끝” → 대원3의 등반지시 → 등반 → “등반완료” → 자기확보 실시 → 등반장비 해제 → 최초 시작지점으로 이동 → “실시완료” 복창 <대원3의 등반지시 후 등반실시 복창부터 등반완료 후 최초 시작지점으로 이동> - 대원3으로부터 등반지시 없이 등반할 경우 감점 - “장비결합 실시”, “등반준비 끝”, “등반완료” 복창 미실시 시 감점, “실시완료” 미실시 경우 제한시간 초과 시 실격 - 등반 시 몸이 회전하여 벽에 부딪히는 경우 감점(단. 엣지부분 올라갈 때 신체가 벽에 닿는 거는 허용) - 이동식 추락장비 및 늘어진 로프가 허리의 높이보다 낮은 위치에 있거나 이동식 추락방지장비의 충격흡수 부분이 두 팔 사이를 통과하는 위치에 있지 않은 경우 감점 및 경고, 미조치 시 실격 - 위험지역에서 자기확보를 하지 않고 장비를 해제를 진행하는 경우 감점 및 경고 미조치 시 실격 <제한시간 : 3분> 평가시간 : 분 초 시간초과 불합격 □	-10 -10 -10	
공통사항	* 안전지역에서 장비 떨어트림 및 모든 평가항목 수행 시 카라비너 미잠금(총점에서 1개당 5점 감점) * 위험지역에서 장비 추락 시 해당장비 사용 불가(총점에서 1개당 20점 감점, 임무수행 불가 시 실격) * 퍼셀푸르직이 지정된 위험지역에서 허리밑으로 들어지는 경우 경고 및 감점, 미조치시 실격(진행 단계 별 10점 감점) * 타 응시자에게 감점 요인을 제공했을 때(매회 10점 감점), 로프를 밟거나 발로 미는 행위 (매회 5점 감점) * 타 응시자에게 기술적 요소를 알려주거나 받는 등 유사행위를 했을 경우(최종 득점점수에서 회당 감점 30점) * 평가 진행이 안 되거나 단계별 진행 중 제한시간을 초과할 경우 실격 * 평가 중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행동 및 안전에 관한 사항 위반 시 실격	개수 개수 회수 회수	

평 가 결 과			100	
평가시간 : 항목별 제한시간 부여		합 격	불합격	

인명구조사 1급 실기 종목별 평가표

○ 로프구조(구조대원-3) 「지휘 · 안전관리 · 보조로프 운영 등」

응시번호	성명	(서명)	평가관	(서명)
------	----	------	-----	------

○ 준비물 및 평가 장비

- 준비물 : 기동복(활동복), 기동화(산악용 구조화), 안전벨트(상·하 일체형), 구조장갑, 구조헬멧, 퍼셀푸르직
- 평가장비 : 도르래(2), 푸르직도르래, 카라비너(2), 로프(11mm×30m), 안전로프(11mm×4m), 이동식추락방지장비, 퀵드로우, 들것
※ 평가 전(前) 로프를 제외한 모든장비는 장비결이에 착용한 상태로 준비한다.

진행단계	평가항목	감점사항	평가점수
준비단계 (20)	1. “현장안전확인” → 안전로프 설치(확보물에 고정매듭+되감기매듭, 끝줄에 이중웁매듭) → 퍼셀푸르직으로 자기확보(감아매기 3회) → 삼각대 점검, 하강로프 설치 상태 점검 → “실시완료” 복창		
	- 현장안전확인을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 감점		-10
	- 안전로프 설치 매듭(퍼셀푸르직 포함)이 올바르게 매듭지 않은 경우 감점		
	- 삼각대 일체 점검을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 감점		-10
	- 하강로프 설치 상태 점검을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 감점		
진입단계 (30)	- 개인안전로프(퍼셀푸르직 확보)를 복부·가슴·등 D링 외 확보하는 경우 실격		
	<제한시간 : 3분 20초> 평가시간 : 분 초 시간초과 불합격 □		
	2. 대원1, 2 하강 전 안전점검 및 하강 지시 <평가시간 미적용>		
	3. 대원2의 하강완료 → 대원4에게 들것 준비 지시 → 하강로프를 삼각대에 옮겨 걸기 → 들것하단에 유도로프 설치(분할고정매듭) → 옮겨 걸기 해체 → 보조로프 확보지점에 로프·도르래 걸착 → 주·보조로프 도르래 삽입 후 삼각대 걸착 → “들것 내려”		
	들것 하강(대원3 보조로프 운영/대원2, 4 지시)		
설치 및 구조단계 (30)	- 대원 1, 2의 하강 전 안전점검을 형식적으로 실시한 경우 감점		-10
	- 옮겨 걸기를 하지 않을 경우, 분할고정매듭이 올바르게 매듭지 않은 경우 감점		
	- 보조로프 설치 시 도르래방향이 엇갈리거나, 주로프와 보조로프 설치가 엇갈려 간섭이 생기는 경우 경고 및 감점, 미조치 시 실격		-10
	- 들것 하강 시 4번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감점, 들것이 가장자리를 벗어날 때 충격이 가해지는 경우 감점		-10
	- 대원 1, 2의 장비가 올바르게 결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강지시를 할 경우 실격		
철수단계 (20)	<제한시간 : 4분> 평가시간 : 분 초 시간초과 불합격 □		
	4. 보조로프를 이동식 추락방지장비를 이용하여(푸르직도르래+퀵드로우) 확보지점 설치 <평가시간 미적용>		
	5. 대원의 준비신호에 당김 및 정지를 지시하여 상부 가장자리에서 7m 아래 지점까지 인양 <평가시간 미적용>		
	6. 대원1의 임무(오버행 및 맨홀통과)완료 후 현장을 지휘하여 인양 → 들것이 최종 인양된 지점에서 삼각대에 연결된 보조로프 도르래를 해체 → 보조로프의 당김 및 대원4에게 주로프 늦춤 지시 → 들것을 대원1과 협력하여 안전지역으로 이동 → “실시완료”		
	<평가시간 적용 : 7분>		
공통사항	- 퀵드로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감점		
	- 주로프 진행속도에 비해 보조로프 팽팽함이 없는 경우 1회째 감점(2회째 실격)		-10
	- 대원4와의 의사소통(로프당겨, 정지, 리셋 등) 및 수신호(육성 등)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감점		
	- 인양 최종지점에서 안전지역으로 들것을 이동할 때 보조로프에 연결된 도르래를 해체하지 않거나, 운용 능력이 미흡할 경우 감점		-10
	- 들것을 지정된 안전지역으로 운반하지 않을 경우 감점		-10
합격	- 이동식추락방지장비의 설치를 올바르게(반대로설치 등) 하지않고 인양 지시를 하는 경우 실격		
	<제한시간 : 7분> 평가시간 : 분 초 시간초과 불합격 □		
	7. 들것 인양 후 삼각대에 연결된 주로프 도르래 해체 → 유도로프를 삼각대에 옮겨 걸기 → 들것에 고정된 유도로프 해체 → 확보물에 1차 고정(말뚝매기) 및 2차 고정(말뚝매기 +웁매듭) → 옮겨 걸기 해체 → 삼각대의 카라비너 2개에 유도로프 2줄 각각 통과 → 대원2에 “등반장비 결합” 지시 → “실시완료” <시간측정 종료> → 대원2 등반지시		
	- 유도로프를 삼각대에 옮겨 걸기를 하지않고 들것으로부터 로프를 풀거나 확보물에 확보한 경우 감점		-10
	- 대원2 등반 시 등반자에게 시선이 고정되지 않은 경우 감점		-10
불합격	- 하강로프 설치가 올바르게 매듭지 않은 경우(해설집 참고) 감점		
	- 유도로프를 하강로프로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원2에게 등반을 지시할 경우 실격		
	<제한시간 : 2분30초> 평가시간 : 분 초 시간초과 불합격 □		
	* 안전지역에서 장비 떨어트림 및 모든 평가항목 수행 시 카라비너 미잠금(총점에서 1개당 5점 감점)	개수	
	* 다른 대원과의 소통을 위한 복창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진행단계에서 감점 10점		
합격	* 순서에 맞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해당 진행단계 0점 처리)		
	* 퍼셀푸르직이 지정된 위험지역에서 허리밑으로 들어지는 경우 경고 및 감점, 미조치시 실격(진행 단계 별 10점 감점)		
	* 자기확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지역 진입시 실격		
	* 타 응시자에게 감점요인을 제공했을 경우 (매회 10점 감점)	횟수	
	* 로프를 밟거나(들것에 깔리거나) 발로 밟는 행위 (매회 5점 감점)	횟수	
합격	* 타 응시자에게 기술적 요소를 알려주거나 받는 등 유사행위를 했을 경우(최종 득점점수에서 해당 감점 30점)	횟수	
	* 대원3의 과실로 평가진행이 안되거나 단계별 진행 중 제한시간을 초과할 경우 실격		
	* 평가 중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행동 및 안전에 관한 사항 위반 시 실격		
평가결과			100
평가시간 : 항목별 제한시간 부여			합격
			불합격

인명구조사 1급 실기 종목별 평가표

○ 로프구조(구조대원-4)		「삼각대 · 주로프 · 당김장치운용 등」			
응시번호		성 명	(서명)	평가관	(서명)

○ 준비물 및 평가 장비

- 준 비 물 : 기동복(활동복), 기동화(산악용 구조화), 안전벨트(상·하 일체형), 구조장갑, 구조헬멧
 - 평가장비 : 로프(11mm×50m), 푸르직 코드(7~8mm/3개), 도르래(4), 등강기, 카라비너(6), 웨빙(25mm×3m/2개), 확보판
- ※ 평가 전 로프를 제외한 모든장비는 장비걸이에 착용한 상태로 준비한다.

진행단계	평 가 항 목	감점 사항	평가 점수
설치단계 (15)	1. 주로프 확보지점 설치, 보조로프 확보지점 설치 → 확보판 연결		
	- 확보지점(랩3폴2) 매듭 형태가 부적절한 경우(해설집 참고) 감점		-15
	- 확보지점 내각이 90° 를 초과하여 벌어질 경우 감점		
	- 확보지점(랩3폴2)을 설치하지 못하였을 경우 실격		
	〈제한시간 : 3분〉 평가시간 : 분 초 시간초과 불합격 □		
진입단계 (25)	2. 대원3의 준비 지시에 따라 들것 상단에 주로프는 분할고정매듭, 보조로프는 되감기8자 매듭 연결, 이중웜매듭 후 주로프를 도르래에 통과 후 확보판에 걸착 → 대원3의 지시에 따라 주로프를 조작하여 들것 하강		
	- 대원3의 들것 준비 지시 없이 독단적인 행동할 경우 감점		-5
	- 주로프를 놓치거나 지나치게 빨리 풀어 들것이 벽 또는 바닥에 강하게 충격을 줄 경우 감점		
	- 들것에 로프 연결 시 매듭이 부적절한 경우 감점		-10
	- 주 · 보조로프 끝 이중웜매듭 미실시 또는 매듭의 형태가 올바르지 않은 경우 감점		
	- 확보지점 도르래에 주로프를 연결하지 않고 손으로 직접 잡아 내릴 경우 감점		-10
	- 들것 하강 중 주로프가 꼬여 5초 이상 정지할 때 감점		
	- 들것 하강 시 대원3과의 소통(육성, 복창)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감점		
	〈제한시간 : 4분〉 평가시간 : 분 초 시간초과 불합격 □		
설치단계 (30)	3. 주로프에 9:1 복합도르래 당김시스템(3:1시스템 2개소 “3:1×3:1”) 설치하며 고정 · 확보용 푸르직 매듭(3회) 실시		
	- 푸르직 매듭의 형태 및 위치 부적절 또는 로프가 도르래와 마찰을 일으키는 경우 감점		-20
	- 도르래 등 장비의 선택이 올바르지 않아 다른 위치에 설치될 경우 감점		-10
	- 9:1 복합도르래 당김시스템을 설치하지 못하거나 푸르직 매듭의 기능불량을 조치하지 못할 경우 실격		
	〈제한시간 : 3분〉 평가시간 : 분 초 시간초과 불합격 □		
구조단계 (30)	4. 대원3의 지시에 의해 인양 및 정지 등 시스템 조작 → 최종 인양지점에서 대원3과 호흡을 맞춰 주로프를 늦춤 → 들것이 안전지역으로 이동하면 “실시완료” 〈대원1의 들것조작 완료 후 부터 들것이 안전지역으로 운반되는 시점까지 평가시간 측정 : 7분〉		
	- 로프의 당김 · 정지신호 이행 못하거나 개별행동 등 대원3과의 소통(복창)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감점		-10
	- 도르래시스템 운용 시 푸르직 매듭의 확보 및 이동(리셋) 등 조작능력이 부적절할 경우 감점		-10
	- 정지 및 리셋 시 확보 이상 유무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감점		
	- 최종 인양지점에서 들것을 안으로 당기기 위해 대원3과 호흡이 맞지 않아 주로프 늦춤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감점		-10
	〈제한시간 : 7분〉 평가시간 : 분 초 시간초과 불합격 □		
공통사항	* 안전지역에서 장비 떨어트림 및 모든 평가항목 수행 시 카라비너 미잠금(총점에서 1개당 5점 감점)	개수	
	* 순서에 맞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해당 진행단계 0점 처리)		
	* 위험지역에서 장비 추락 시 해당장비 사용 불가(총점에서 1개당 20점 감점, 임무수행 불가 시 실격)	개수	
	* 타 응시자에게 감점요인을 제공했을 경우 (매회 10점 감점)	횟수	
	* 로프를 밟거나 발로 미는 행위 (매회 5점 감점)	횟수	
	* 타 응시자에게 기술적 요소를 알려주거나 받는 등 유사행위를 했을 경우(최종 득점점수에서 회당 감점 30점)	횟수	
	* 평가진행이 안되거나 단계별 진행 중 제한시간을 초과할 경우 실격		
	* 평가 중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행동 및 안전에 관한 사항 위반 시 실격		

평 가 결 과			100	
평가시간 : 항목별 제한시간 부여		합 격	불합격	

인명구조사 1급 실기 종목별 평가표

○ 유해물질 대응. I

(제한시간 : 항목별 부여)

응시번호

성명

(서명)

평가관

(서명)

○ 준비물 및 평가 장비

- 준 비 물 : 기동복(활동복), 기동화(산악용 구조화), 화학보호복 세트(Level A(허리벨트 있는 제품, 걸장갑(필수)), 공기호흡기 세트(보조면체 제외), 속(면)장갑, 구조헬멧, 비상탈출용 칼, 김서림방지제, 손수건
- 평가장비 : 필기구, ERG북, KEY INFO GUIDE(97종), 무전기(통화식)

진행단계	평가항목		감점 사항	평가 점수
물질정보 확인 (40)	평가 방법	* 응시자가 직접 주점함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주점 * 주점용지에 일반물질(4-1문항) 및 용기형태(4-2문항)를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으며 해당되는 항목만 작성 - 일반물질의 경우 주점용지에 물질명, 누출규모(대/소), 주·야 상황을 표기 - 용기형태의 경우 주점용지에 물질명, 용기형태, 풍속(km/h), 주·야 상황이 표기 * 제한시간 3분30초 내에 지점번호 등 아래 8개 문항을 기재(시간초과 및 오답기재시 0점)		
	유해물질명 ()			
	1. UN번호(번) 2. 지점번호(번)			
	3. 물질유형별 유출·누출시 비상대응 방법(~ Page)			
	4-1. 초기이격거리 및 방호활동거리(m), (km)			
	4-2. 용기형태 및 풍속 별 초기이격 및 방호활동거리(m), (km)			
	5. 물과 반응 시 독성가스 물질명()* 해당 없는 경우 “해당없음” 또는 “×” 로 반드시 기재			
	6. NFPA 코드 [건강(), 화재(), 반응(), 특수()] * 특수는 표시 및 설명기재 및 해당 없는 경우 “해당없음”, “×”, “-” 로 반드시 기재			
	7. 물리화학적 특성 [끓는점 () / 증기밀도 ()]			
8. 국내규제 관계법령 () *모두기재				
화학복 착용 (60)	1. 평가관의 화학보호복 착용지시에 “실시” 복창하고 공기호흡기 보조마스크 커넥터에 공기조절 밸브 호스를 연결 * 복창 미실시 감점			-5
	* 공기조절밸브 호스를 연결하지 않는 경우 감점			
	2. 용기밸브개방 후 “경보음, 점멸등 이상없음”, “압력 000”, “공기누출 이상없음” 복창 * 실제 압력과 다르거나 복창 미실시 감점			
	* 완전개방 후 반바퀴 잠금하지 않는 경우 감점			
	* 밸브개방 시 압력계이지 지면방향으로 향하지 않은 경우 감점			
	* 실린더 압력이 250kgf/cm ² 미만인 경우(실격)			
	3. 화학보호복 외관점검(안면창, 장갑, 장화, 지퍼(실제 일부를 작동), 공기조절밸브, 배기밸브) * 점검 항목을 누락하거나 실제 손으로 터치하여 확인하지 않는 경우 감점			-5
	4. 화학보호복 안면창에 김서림방지제를 도포하고 흐르는 방지액을 손수건으로 가볍게 닦은 후 손수건을 주머니에 휴대 * 김서림방지제를 도포하지 않거나 손수건을 주머니에 휴대하지 않는 경우 감점			-5
	5. 의자에 앉아(의자사용 선택) 하의 착용(허리벨트 착용) * 허리벨트 체결하지 않는 경우 감점			-5
	6. 면체를 목에 걸고 등지게 착용(어깨→허리→가슴) * 순서에 맞지 않거나 꼬임 발생한 경우 감점			-5
	7. 공기조절밸브 연결구에 호스 결합 * 호스를 결합하지 않는 경우 감점, 11번 평가항목 “실시완료” 복창 전까지 미초치 시 실격			-5
	8. 무전기 착용(전원ON) 및 비상탈출용 칼 휴대 * 무전기 전원ON 하지 않거나 비상탈출용 칼 휴대하지 않는 경우 감점			
	* 무전기 또는 비상탈출용 칼을 떨어뜨린 경우 감점			-5
	9. 면체를 착용 후 양압으로 전환하여 양압상태와 바이패스상태를 점검 * 면체를 순서(6점식은 가운데→아래→위, 4점식은 아래→위)에 맞지 않게 착용하거나 머리카락이 면체 안쪽에 보이는 경우 감점			-5
	* 양압 전환하지 않거나 양압상태와 바이패스상태를 점검하지 않는 경우 감점			
	10. 헬멧 및 속장갑 착용 * 헬멧 또는 속장갑 착용하지 않는 경우 감점			-5
	11. 화학보호복 상의 착용 후 “실시완료” 복창 <시간종료> * “실시완료” 복창에 시간종료(감점사항 없음)			
* 모든 장비의 착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실시완료 보고 시 실격				
12. 평가관의 단계별(0→1→2→3→0) 공기조절밸브 조작 지시에 밸브조작 * 공기조절밸브 위치가 평가관의 지시 단계에 맞지 않는 경우 감점			-5	
13. 무전기 작동능력 <평가관의 감도확인 무전에 응답> * 무전기 송·수신이 되지 않는 경우 감점			-5	
공통사항	* 각 평가항목 감점사항은 다음 평가항목 시작 전까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 * 공기조절밸브가 부착된 화학보호복을 착용해야 하며 규정된 장비를 임의 변경하는 경우 실격 *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행동 및 이전에 과한 사항 위반 시 실격			

평 가 결 과			100
제한시간 : 5분 <화학보호복 착용>	합 격	불합격	
최종 평가기록 : 분 초			

인명구조사 1급 실기 종목별 평가표

○ 유해물질 대응. II		(제한시간 : 각 항목별 부여)			
응시번호	성 명	(서명)	평가관	(서명)	

○ 준비물 및 평가 장비

- 준비물 : 기동복(활동복), 기동화(산악용 구조화), 화학보호복 세트[Level A(허리벨트 있는 제품, 걸장갑(필수)), 속(면)장갑, 구조헬멧, 김서림방지제, 손수건, 비상탈출용 칼
- 평가장비 : 풍향풍속계, 휴대용제독기, 경계봉 4개, 통제선(적,황), 누출시설 차단장비, 무전기(통화식), 누출물질 수거통(2개), 오염확대 방지장비(흡착포, 흡착봉-펜스), 집게, 세척용 솔

진행단계	평 가 항 목	감점 사항	평가 점수
평가방법	응시자가 평가 시작 전 추천한 상황(장비) 2가지(고압,저압)를 경계구역 설정 후 누출 차단하고 방어 및 확산방지를 실시한다. * 고압 ①고압누출방지호스 ②누출방지슬리브 / 저압 ①플랜지배수백 ②누출방지배수백 ③누출방지밴드 * 항목별 부여시간을 합계하여 총시간으로 평가한다. 예) 경계구역설정 3분 +고압(1) 5분 + 저압(2) 7분 + 방어및확산방지 4분 =19분 * 누출차단 방법은 해설집 참조		
초기대응 (10)	1. 풍향풍속계 설치 및 경계구역 설정 <제한시간 : 3분> * 풍향·풍속계 및 경계구역 설치가 부적절한 경우 감점 * 풍향·풍속계 및 경계구역 설치 미실시하는 경우 1회 경고 및 감점, 미조치 시 실격 * 풍향·풍속계 및 경계구역 설치 후 무전보고, 미실시하는 경우 감점		-10
누출차단 (80)	2. 누출차단 장비운용(해당 장비별) 2개 * 차단 실패 시 해당 차단장비 평가항목 배점 0점 처리 * 누출차단 확인용으로 흡착포 사용 가능 / 평가 종료 후 누출차단 확인		
추첨1 (고압)	① 고압누출방지호스 <40점> <제한시간 : 5분> * 정확한 누출 위치파악 및 장비운반(누출차단/오염확대 방지장비) 부적절 시 감점 * 호스설치 과정에서 호스가 바닥에 닿거나 누출시설 등에 닿는 경우 감점 * 실린더 연결 불량 또는 공기주입압력(8~10bar)이 적절하지 않는 경우 감점 * 누출차단 완료 확인 후 무전보고 및 주변정리(장비회수) 미실시 시 감점 * 응시자 상호간 의사소통이 되지 않고 단독적으로 행동 시 감점		-5 -10 -15 -10
	② 누출방지슬리브 <40점> <제한시간 : 7분> * 정확한 누출 위치파악 및 장비운반(누출차단/방어 및 확산방지 장비) * 배관직경에 맞는 장비선택(배관 직경에 맞는 장비를 선택하지 못할시 감점) * 누출방향에 맞는 슬리브의 위치여부 및 내피고무의 위치가 슬리브 외부로 돌출 시 감점 * 나사 잠금 부적절(슬리브 나사선 방향에 맞지 않게 결합한 경우, 한쪽 방향만 무리하게 조임, 부적절한 렌치사용으로 볼트 마모 등) 감점 * 누출차단 완료 확인 후 무전보고 및 주변정리(장비회수) 미실시 시 감점 * 응시자 상호간 의사소통이 되지 않고 단독적으로 행동 시 감점		-5 -5 -10 -10 -10
추첨2 (저압)	① 플랜지배수백 <40점> <제한시간 : 5분> * 정확한 누출 위치파악 및 장비운반(누출차단/방어 및 확산방지 장비) * 누출지점 배수백 설치(지퍼결합·잠금 및 벨크로 붙임상태), 배수밸브 위치(하단부) * 발펌프 연결 및 공기주입압력(1.5bar)의 적정성 * 배수호스 결합, 배수밸브 개방(누출물질 수거통 배수/누출물질 수거통 미설치 감점) * 누출차단 완료 확인 후 무전보고 및 주변정리(장비회수) 미실시 시 감점 * 응시자 상호간 의사소통이 되지 않고 단독적으로 행동 시 감점		-5 -10 -10 -5 -10
	② 누출방지배수백 <40점> <제한시간 : 7분> * 정확한 누출 위치파악 및 장비운반(누출차단/방어 및 확산방지 장비) * 배수백 벨트 조임위치 적정성 및 래치위치(배수백과 인접), 배수위치(상·하 확인) 부적절 * 벨트 한바퀴(360도) 이상 꼬임 및 조임(고정)정도, 래치의 사용의 숙달 및 마감처리 * 배수호스 결합, 배수밸브 개방(배수호스 미설치/배수통 미설치) * 발펌프 연결 및 공기주입압력(1.5bar)의 적정성 * 누출차단 완료 확인 후 무전보고 및 주변정리(장비회수) 미실시 시 감점 * 응시자 상호간 의사소통이 되지 않고 단독적으로 행동 시 감점		-5 -5 -10 -5 -5 -10
방어 및 확산방지 (10)	③ 누출방지밴드 <40점> <제한시간 : 5분> * 정확한 누출 위치파악 및 장비운반(누출차단/방어 및 확산방지 장비) * 누출지점에 맞는 장비선택(배관 직경에 맞는 장비를 선택하지 못할시 감점) * 벨트 한바퀴(360도) 이상 꼬임 및 조임(고정) 정도, 래치의 사용의 숙달 및 마감처리 * 발펌프 연결 및 공기주입압력(1.5bar)의 적정성 * 누출차단 완료 확인 후 무전보고 및 주변정리(장비회수) 미실시 시 감점 * 응시자 상호간 의사소통이 되지 않고 단독적으로 행동 시 감점		-5 -5 -10 -10 -10
	3. 누출차단 시설 주변 오염확대 방지 및 대원 상호제독 <제한시간 : 4분> * 오염확대 방지장비(흡착포, 흡착봉-펜스) 사용 (흡착포는 회수) 대원 상호 제독 대원별 30초 이상 미실시 시 감점 * 상황에 맞지 않은 장비선택 및 오염확대 방지가 부적절하거나 미흡한 경우 또는 오염확대 방지 완료 후 무전보고 미실시(감점), 대원 상호제독이 부적절하거나 미흡한 경우 감점		-10
공동사항	* HOT_ZONE에서 WARM_ZONE으로의 이동 2회 이상인 경우(매회 10점 감점) * 무릎을 바닥에 꿇고 작업하거나 또는 뛰어다니는 경우(매회 10점 감점) * 오염물질에 불필요하게 대원 및 장비가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경우(매회 5점 감점) * 누출차단 완료 무전보고 후 평가실시 장비 수정불가(수정 시 해당 항목 차단실패로 간주함) * 평가 중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행동 및 안전에 관한 사항(평가 완료 시 공기호흡기 잔압 50(bar) 이하 등) 위반 시 실격	횟수 횟수 횟수	

평 가 결 과		100
최종 평가기록 :	분 초 합 격	불합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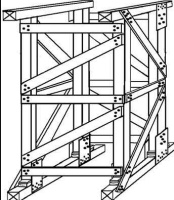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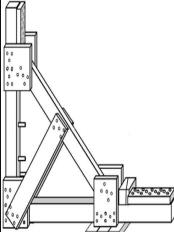
인명구조사 1급 실기 종목별 평가표

○ 구조물 안정화(Double`T 임시수직지주) (제한시간 : 항목별 부여)

응시번호	성명	(서명)	평가관	(서명)
------	----	------	-----	------

○ 준비물 및 평가 장비

- 준비물 : 기동복(활동복), 기동화(산악용 구조화), 방화복 상·하의, 구조장갑, 구조헬멧, 관절 보호대, 보호용 안경, 개인시계(선택)
- 평가장비 : 팔기구, 목재, 못, 조립장비(망치, 줄자, 수평계 등 공구류) 등, 전자계산기
※ 망치, 줄자, 공구벨트는 개인장비 허용

진행단계			평가항목		감점사항	평가점수
설계능력 평가 (20)	책형	평가방법	* 평가관이 제시한 문제지에 기재된 치수를 확인하여 안정화(쇼어링) 설계 * 설계 목재규격 문제지에 기재 <프린트물 단위 : cm> 구분 (4by4), (2by4) * <제한시간 5분>이며 오답 또는 기재하지 못한 부분은 감점 * 전자계산기 사용가능 ※ 휴대폰 사용불가 * 오차범위는 ±1cm 이내 정답(벽체지지 중간 보강대 +10cm 이내)			
			1. 엮어 짤 수직지주 (10점) ※ 임시대피를 위한 한쪽 방향은 개방할 것, 오버행 각 30cm			
		(4by4)	① 상판(상부보) · 밑판 ■ 길이() ■ 수량()	-10		
			② 기둥 ■ 길이() ■ 수량()			
		(2by4)	③ 수평보강대 ■ 길이() ■ 수량()			
			④ 대각선보강대 ■ 수량()			
		⑤ 썬기 ■ 수량(조)				
		⑥ 거싯() ■ 넓이(×) ■ 수량()				
		(4by4)	① 밑판 ■ 길이()	-10		
			② 기둥(벽판) ■ 길이()			
(2by4)		③ 갈퀴(대각) ■ 길이() ※ 양쪽 각을 처낸 실제길이				
		④ 중간버팀(보강)대 ■ 수량() ■ 길이() ※ 보강대 길이 +10cm 이내까지 정답				
⑤ 보강판(밀대) ■ 수량() ■ 길이(,)						
⑥ 거싯() ■ 넓이(×) ■ 수량()						
준비단계 (10)	평가방법	* 2인1조 평가를 진행하며 Double "T" 지주를 조립 · 설치 <제한시간 12분> 초과 시 불합격				
	① 작업공간 주변 위험요소 및 지반의 안정성 미확인 또는 장애물(잔해) 정리 미실시 시 감점			-5		
상판·기둥 조립 (20)	② 지주 설치장소의 높이 측정 후 거싯에 측정된 높이와 기둥 길이, 중간 거싯 위치 미 기재 시 감점			-5		
	① 상판과 기둥 사이에 유격이 있는 경우 감점			-5		
	② 기둥 사이의 간격 및 좌우 오버행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해설집) 감점			-5		
지주설치 (30)	③ 상부 거싯 및 중간 거싯 위치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해설집) 감점			-10		
	① 지주의 설치 위치를 벗어나 설치한 경우 감점			-10		
	② 하판 좌우 오버행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감점			-10		
	③ 썬기가 앞이나 뒤로 돌출된 경우(측면확인) 감점 ※ 썬기 절단면을 맞춰 설치하지 않거나 지주의 수직(수평) 눈금선 바깥라인 닿은 경우(이 맞지 않은 경우) 실격			-10		
썬기 고정 (20)	① 썬기 결합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감점(해설집 참고)			-10		
	② 썬기 못 고정이 되어있지 않거나 정확한 위치에 고정하지 않은 경우 또는 고정못(대못)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감점			-5		
	③ 하부 거싯의 위치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감점			-5		
공통사항	* 추가 감점사항(5점씩 매회 중복감점)					
	① 목재길이 및 거싯 유형(패턴)에 맞지 않게 못박기를 하거나(거싯당) 못박기를 하지 않은 경우(못 개수당) 매회 감점			수량	-5	
	② 못의 끝단(머리)이 1cm이상 남은 경우, 목재를 벗어난 경우 감점 (매회)			수량	-5	
	* 공통사항 각 항목당 최대 감점 20점(매회 · 거싯당 감점사항)					
	* 장비를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 감점				-10	
	* 평가 중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행동 및 안전에 관한 사항 위반 시 실격(해설집 참고) * 실시완료 후 지주가 충분히 고정 되지 않은 경우(구조물을 손으로 밀어서 움직이는 경우) 실격					
평가결과					100	
제한시간 : 12분						
최종 평가기록 : 분 초						
합격						
불합격						

총감점

인명구조사 1급 실기 종목별 평가표

○ 중량물 인양 및 이동

(제한시간 : 항목별 부여)

응시번호	성명	(서명)	평가관	(서명)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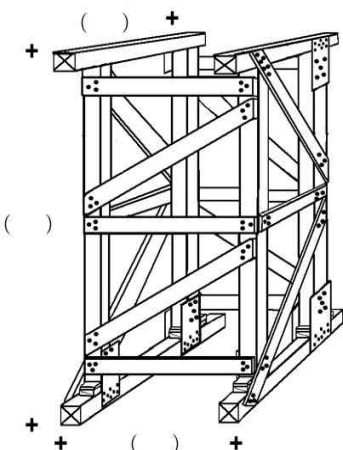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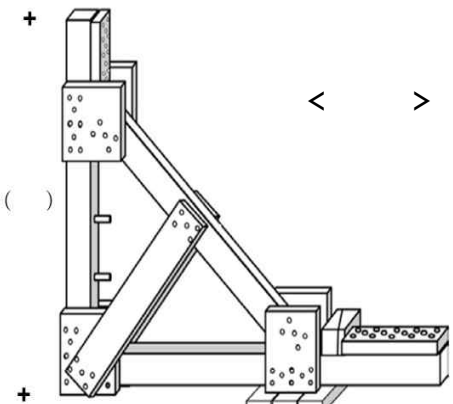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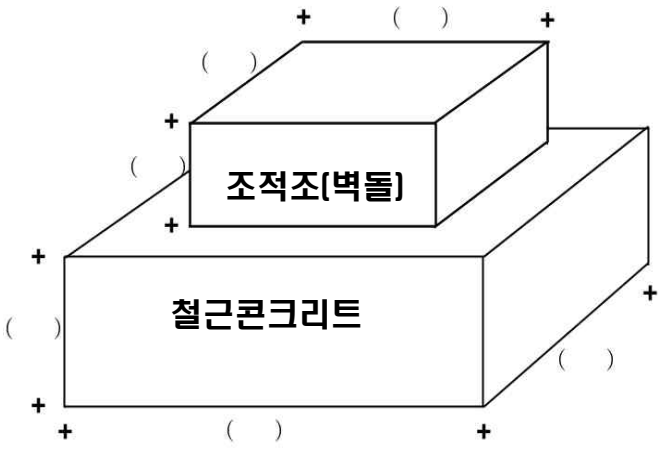
○ 준비물 및 평가 장비

- 준비물 : 기동복(활동복), 기동화(산악용 구조화), 방화복 상·하의, 구조장갑, 구조헬멧, 관절보호대, 보호용 안경
- 평가장비 : 필기구, 에어백SET, 공기실린더, 버팀목(24), 레일목(4), 파이프(4), 지렛대(3), 썰기목(4~8)

진행 단계	평 가 항 목					감점 사항	평가 점수
중량물 계산 (10)	책형	평가 방법	* 출제된 문제지에 기재된 내용을 계산(중량물 형태는 매회 변경 가능)				
			* 중량물	예)철근콘크리트 <1㎡ = 2,500kg 기준> 무근콘크리트 및 조적조(벽돌) <1㎡ = 2,100kg 기준>			
			* <제한시간 3분>이며 오답 또는 기재하지 못하는 경우 감점 * 평가운영상 설계능력평가와 함께 진행할 수 있으며 <총 제한시간 8분> 부여				
* 풀이과정을 쓰지 않은 경우 감점이며 정답은 소수점은 절삭하고 정수를 기재							
(풀이과정)					(정답)	kg	-10
평가 방법	* 4인 1조 조별평가를 진행하며 임무지정은 추첨으로 진행, 임무변경은 4번 항목 완료 후 임의지정 <제한시간 20분> 초과 시 불합격						
	* 에어백은 공기호흡용기와 압력조정기만 결합된 상태에서 시작하며 모든 장비는 지정된 장소에 위치						
	* 중량물을 인양하여 지정된 위치로 이동시킨 후 지면에 안착 완료 시간까지 측정						
	* 초기 중량물 앞부분으로부터 진행방향으로 5m 되는 지점을 선으로 표시한 후 중량물이 선을 완전히 통과하도록 지면에 안착시켜야 함						
인양 (30)	1. 해당 장비 위치선정 및 현장안전(주변 장애물 처리)						
	* 주변 장애물 처리(사전에 지정된 위치에 놓을 것) 미실시 감점						-5
	2. 에어백 결합 및 인양준비						
	* 지렛대가 적절하지 않는 면으로 삽입하여 인양할 경우						-5
	* 에어백 결합 후 에어가 새어나오거나 허용압력(7~8bar)이내를 벗어난 경우						-5
	* 중량물 하부로 에어백 3분의 2이상 안쪽으로 밀어넣지 않고 설치하는 경우 감점						-5
이동 준비 (35)	3. 인양						
	* 지휘자 절차 및 안전성 대한 평가가 부적절(신호불량, 장비위치 불량, 구조물 흔들림, 호스끼임)한 경우 감점						-10
	* 크리빙(버팀목)의 위치 및 방향, 교차지점 말단부 검침 5~10cm 이내 확보 안할 시 감점						-10
	* 중량물과 썰기 사이의 과도한 공간(5cm 이상)이 발생한 경우 감점						-10
	4. 에어백 제거 → 레일목 및 레일(원형)파이프 설치 → 에어백 재설치						
	* 레일목 주변의 장애물을 제거하지 않은 경우						-5
이동 (25)	5. 크리빙(버팀목)제거 및 레일파이프에 중량물 안착						
	* 지휘자 절차 및 안전성 대한 평가가 부적절(신호불량, 장비위치 불량, 레일파이프 안착 중 구조물 흔들림, 호스 끼임)한 경우 감점						-15
	* 중량물과 썰기 사이의 과도한 공간(5cm 이상)이 발생한 경우 감점						-10
	* 중량물 이동 단계에 들어가기 전 레일파이프에 안착 이후 중량물이 움직일 경우 감점						-10
이동 (25)	6. 중량물(구조물) 이동(5m)하여 지면에 안착						
	* 중량물 이동중 중량물이 레일목 위에 걸려있는 경우 감점						-25
	* 중량물 이동중 신체로 레일 파이프를 접촉할 경우 감점						-25
	* 중량물 이동중 레일 파이프를 벗어나 지면에 떨어질 경우 실격						-25
공동사항	* 썰기의 부적절 운용(뒤집어서 설치할 경우) 총점에서 개수당 5점 감점					수량	
	* 타 응시자에게 감점요인을 제공했을 시 총점에서 매회 5점 감점					횟수	
	* 크리빙 설치 시 신체가 중량물 밑으로 들어갈 경우 총점에서 매회 5점 감점					횟수	
	* 크리빙 설치 시 목재 옆면을 잡지 않고 운용 시 총점에서 매회 5점 감점					횟수	
	* 응시자 수준 미달로 평가 진행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응시자 실격						
	* 평가 중 본인 부주의로 부상을 당하거나 원인을 제공한 경우 실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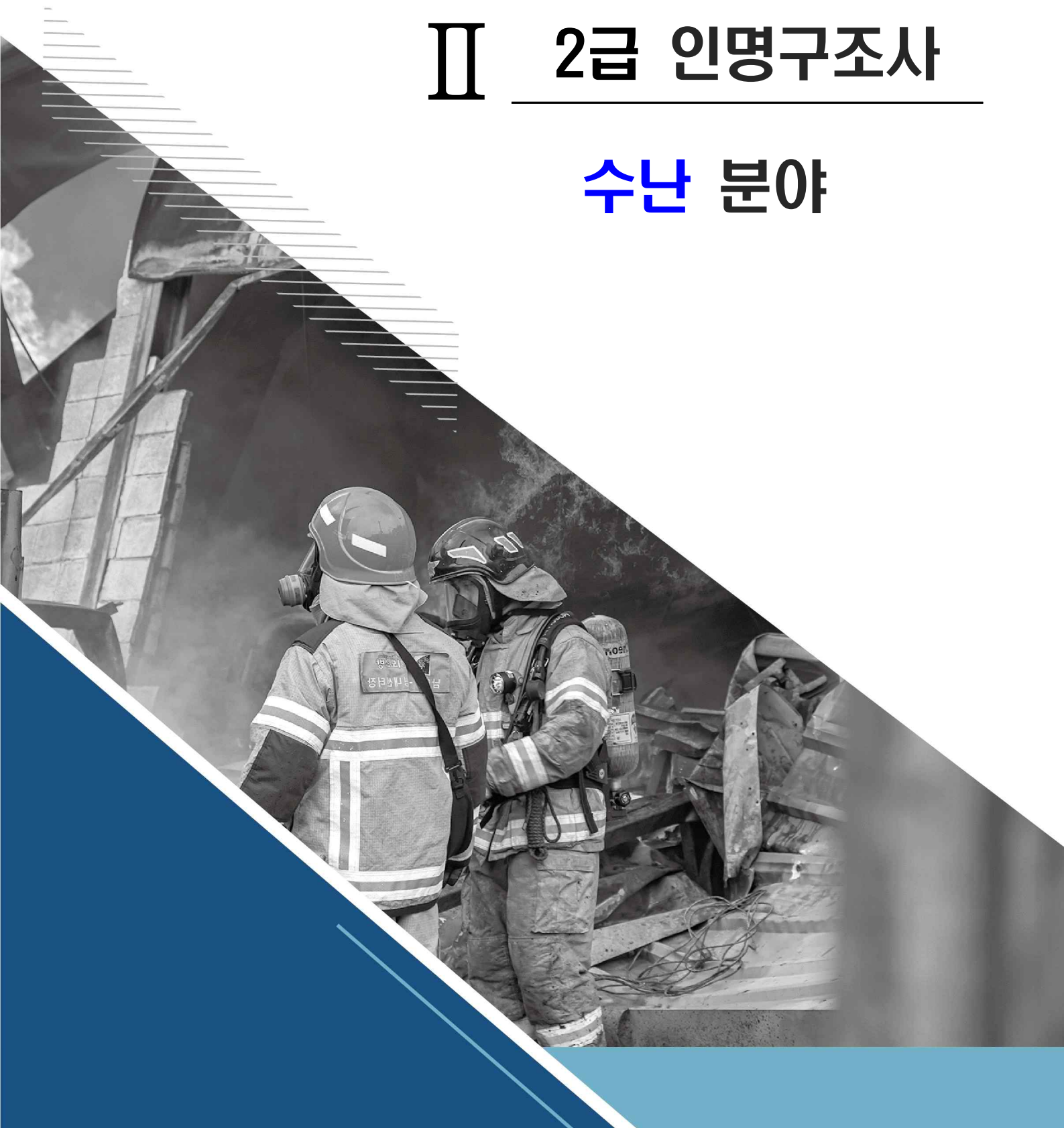
평 가 결 과				100	
제한시간 : 20분 (인양 및 이동)		합 격		불합격	
최종 평가기록 : 분 초					

안정화(쇼어링) 설계능력 평가

목재 규격	<4by4>=()×()cm	<2by4>=()×()cm
1. 엮어 짤 수직지주		
2. 벽체지지(갈퀴지주)		
<중량물 계산 평가> * 원형구조물 변경 및 빈공간 추가 등 구조물 형태는 매 회 변동 가능 함.		
		

Ⅱ 2급 인명구조사

수난 분야



인명구조사 2급(수난) 실기평가 유의사항

1. 유의사항

1. 평가관은 훈령에 의해 지정된 자로 하며, 평가표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평가의 원활한 운영과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평가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비공개로 관리하며, 평가 종료 후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한 자에 한하여 공개한다.
※ 평가관은 시험운영에 관한 서약서에 서명하여야 한다.(보안, 공정성, 언행, 행동, 안전 수칙 등)
2. 평가관은 평가 시작 전 안전점검 및 안전요원의 배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우려 시 즉시 평가를 중지하고 정위치 한다.
3. 평가 중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행동 및 안전에 관한 직접적인 사항 위반* 시에는 실격처리 한다.
* 응시자 본인의 안전, 평가 결과물, 응시자의 불안정한 행동 등으로 해설집의 내용을 준용하여 평가관이 판단한다.
4. 평가관 및 응시자는 본인 여부(응시자의 응시표 및 신분증)를 상호 확인해야 한다.
5. 시험 접수 후 응시자는 무단행동 금지 및 평가관(운영요원)의 통제에 따라야 하고, 시험에 방해되는 행동을 하는 자는 퇴장조치 할 수 있다.
6. 모든 평가는 평가관의 실시 지시에 복창 후 실시하고 완료 후 평가관에게 완료 보고 후 평가관의 지시에 따르며, 제한시간 내에 실시하는 평가는 평가관이 종료(정지) 신호를 알리면 즉시 모든 행동을 정지하고 평가관의 통제에 따른다. (별도의 절차가 없는 경우에 한하며, 평가 종료 신호 후 점수에 영향을 끼치는 행동을 하는 경우 부정행위 실격처리)
7. 평가항목 중 세부항목 미수행하거나 부적절 또는 순서에 준하여 해당 항목을 실시하지 않고 다음 항목을 진행하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 “0” 점 (별도의 평가 기준이 없는 경우에 한함)
8. 평가가 시작되면 종료 전까지 재평가를 허용하지 않는다. (단, 충분한 장비점검을 하였음에도 시험 도중 평가장비 결함 발생 시 평가관의 확인 후 재평가를 허용한다.)
9. 평가 시 실기평가장에서 준비하는 평가장비에 대해서는 개인장비 사용을 제한한다. (단, 해설집에 개인장비 사용이 가능하다고 명시한 평가장비는 예외로 한다.)
10. 시험종료 후 시험장비는 원위치시켜야 한다.

2. 평가 진행방법

1. 인명구조사 2급(수난) 실기평가는 기본역량평가 1개 종목과 구조기술평가 2개 종목으로 총 3개 종목이며 기본역량평가를 통과하여야 구조기술평가에 응시할 수 있다.

구 분		평 가 종 목
인명구조사 2급(수난)	기본역량평가	○ 기초수영능력
	구조기술평가	○ 수중인명구조 ○ 수상인명구조

2. 평가종목별 평가방법은 단계적 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세부평가항목 진행은 평가관의 지시에 의한다. (기초수영능력의 경우 입영, 잠영, 수영의 순서는 기관의 사정에 따른다.)
3. 평가 시작 전 장비점검 등 평가 준비를 위한 시간 약 5분을 응시자에게 제공한다.
4. 감점 합계가 60점을 초과 또는 제한시간을 초과한 경우 시험을 중지한다.
5. 최종합격은 기본역량평가 합격 후 구조기술평가 평가종목별 40점 이상에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하여야 한다.
6. 각 진행단계의 감점이 해당 진행단계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진행단계 점수는 0점 처리 (단, 공통사항에 감점기준 기재된 경우 별도 감점 적용)

인명구조사 2급(수난) 총괄 채점표

1. 응시자 인적사항

응시번호		소 속		직 급		성 명	
------	--	-----	--	-----	--	-----	--

2. 평가항목 및 점수

구 분	평 가 종 목	종점 목수	평점 가수	비고
기본역량 평 가	기초수영능력(입영, 잠영, 수영)	합/불		
구조기술 평 가	수중 인명구조	100		호흡기 찾기, 장비탈부착 중 임무 임의지정
	수상 인명구조	100		

최 종 평 가 결 과

합격		불합격		총점 (평균)	()
----	--	-----	--	------------	------------

인명구조사 2급(수난) 기본역량 평가표

○ 기본역량평가(기초수영)

응시번호		성 명	(서명)	평가관	(서명)
------	--	-----	------	-----	------

○ 준비물 및 평가 장비

- 준 비 물 : 수영모, 수경, 수영복(전신 또는 부력을 가진 수영복 불가)
- 평가장비 : 초시계, 호각, 레스큐 튜브, 로프(선택)

종목	평가항목
입영	1. 총 3분을 실시하되, 신체를 수면과 수직으로 유지한 상태로 최초 2분은 구강(아랫입술)이 수면 위로 노출되어야 하고, 남은 1분은 구강 및 양 손목 이상이 수면 위로 노출된 상태로 떠 있어야 한다. ※ 몸통 회전(90° 이상), 손목 및 구강이 수면 아래, 몸 또는 머리(귀가 수면에 닿는 경우)가 누운 자세, 이동하는 경우 1회 경고, 2회 실격 ※ 수난구조훈련장 벽면, 지지물 등에 접촉하거나 다른 응시자와 신체접촉 등으로 평가를 방해하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실격
잠영	2. 수중(몸 전체가 물속)에서 출발하여 25m 이상 이동(영법은 자유) ※ 최종 통과지점(25m) 도착 전에 <u>신체 일부가 수면 위로 떠오를 경우*</u> 실격 * 머리, 엉덩이, 손, 팔, 발, 다리 등이 수면 위로 떠오를 경우 ※ 25m 통과 기준 : 출발 반대편 25m 지점 벽면을 수중에서 손으로 터치
수영	3. 제한시간(5분 이내)에 영법에 관계없이 200m 거리를 수영해서 갈 수 있어야 한다. ※ 수면 이동 및 방향전환 시 신체일부가 바닥에 닿는 경우 실격 ※ 수면 이동 중 벽면(방향 전환 시는 제외) 또는 라인을 잡는 경우 실격 ※ 방향 전환 시 벽면을 잡는 동작과 방향전환의 동작이 연속되지 않을 경우(호흡을 2회 이상 하는 경우) 실격

평 가 결 과					
입	영 : 3분 이상 □, 3분 미만 □	합 격		불합격	
잠	영 : 25m이상 □, 25m 미만 □	합 격		불합격	
기초수영(제한시간 5분) :	분 초	합 격		불합격	

인명구조사 2급(수난) 실기 종목별 평가표

○ 수중 인명구조

(일부 항목 제한시간 부여)

응시번호	성명	(서명)	평가관	(서명)
------	----	------	-----	------

○ 준비물 및 평가 장비

- 준비물 : 잠수장비세트(해설집, 잠수모(수모복), 오리발(스핀 불가), 습식잠수복(2mm 이상, 반발 및 튜브제외), 다이브컴퓨터(선택사항)
- 평가장비 : 로프(8m), 상승하강·수색장비 일체(앵커 6Kg 2개 등)

진행 단계	평가 항목	항목 점수	평가 점수
준비	응시자는 잠수복을 착용 후 평가장비를 지정된 장소에 정렬하고 시작지점에 정위치 한다. * 모든 장비는 평가실시 전 응시자 스스로 작동점검을 실시, 확인하여 조치하고 평가 간 개인 준비물에 문제가 발생하여 진행이 불가한 경우 실격		
장비 결합 및 착용 (15)	1. 잠수장비 결합(바닥에 정렬된 장비를 결합) → 잠수장비 착용 ■ <장비결합> 실린더 및 O링 점검 → BC결합 및 결합상태 점검 → 호흡기 결합 → 호흡기 BC연결 → 실린더개방 → 장비기능 점검 ■ <장비착용> 웨이트착용 → 장비착용 → 오리발 및 마스크 착용 → OK수신호 ※ 평가관의 장비결합 실시부터 응시자의 장비결합완료 복착까지 시간을 측정<장비착용 제외> * 실린더 점검(외관, 내부공기, O링), 덴벨브형식(호흡기O링), BC결합 등 장비 점검 부적절 감점 * 순서에 맞지 않게 진행한 경우 감점(OK수신호 포함) * 호흡기의 연결(실린더, BC), 실린더결합 및 개방 방법, 웨이트 등 잠수장비 결합 및 착용, 점검 중 일부가 부적절한 경우 경고 후 감점, 미조치 시 실격 * 장비 점검 미실시 또는 실린더의 개방 압력(공기량)이 150bar 미만인 경우 경고 후 감점, 미조치 시 실격 * 장비결합시간이 3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진행단계 0점 처리, 4분을 초과하는 경우 실격 <제한시간 내 O링 또는 용기 교환가능>	-5 -10	
입수 (5)	2. 평가관 입수신호 → 부력확보 → 입수지점 확인 → 서서입수 → 장비이상유무확인 → OK수신호 * 서서입수 동작 부적절하거나 입수 후 BC양성부력 미흡으로 구강(호흡기)이 잠기는 경우 감점 * 입수 지점 확인을 정확하게 하지 않은 경우 감점 * 장비이상유무확인을 형식적으로 진행한 경우 감점 * 순서에 맞지 않게 진행한 경우 감점(OK수신호 포함)		-5
하강 (20)	3. 평가관의 하강신호 → 응시자의 하강수신호 → 하강라인을 보며 하강 → 2m정지 후 OK수신호 → 평가관의 하강신호 → 응시자 하강수신호 후 하강 * 2m 안전정지 시 부력(상하±50cm) 유지하지 않을 경우 감점 * 하강라인 1m 이상 이탈 시 감점 * 하강 중 수면상승, 압력평형 부적절로 상승 후 재하강하는 경우 감점 * 하강 자세가 불안정(뒤로 누운 자세, 앞으로 과도하게 누운 자세)한 경우 감점 * 하강라인을 잡을 경우 감점 * 하강라인을 보지 않을 경우 감점 * 순서에 맞지 않게 진행한 경우 감점(모든 수신호 포함)		-20
평가관 의의 지정 (20)	호흡기 찾기 4-1. 무릎앉아 대기 → 평가관 실시신호 → 응시자 실시신호 → 호흡기 찾기(기울어 찾기) 실시 → 마스크 탈부착 실시 → 마스크 물빼기 → OK수신호(제한시간 없음) * 주 호흡기 찾기(기울어 찾기) 자세가 부적절한 경우 감점 * 호흡기 찾는 동안 소량의 공기 배출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 감점 * 마스크 물빼기 후 수경에 물이 차있는 경우 감점(2회까지 시도인정) * 순서에 맞지 않게 진행한 경우 감점(모든 수신호 포함)	-10 -10	
장비정렬착	4-2. 무릎앉아 대기 → 평가관의 실시신호 → 응시자 실시신호 → BC공기배출 → BC탈착 → 장비정렬 → OK수신호 → 역순착용 → OK수신호(제한시간 없음) * 자세가 불안정(양쪽 무릎 떼서 중심 잡지 못하거나 좌측 또는 우측으로 이동)한 경우 감점 * BC이탈 및 공기통 상승(실린더 바닥면이 응시자 어깨를 넘는 경우)하는 경우 감점 * 장비 정렬 시 보조호흡기가 실린더 뒤쪽으로 꼬여있거나 게이지가 꼬여있는 경우 감점 * 역순착용 시 각 벨트결착 불량·끈 조절 미실시·고임 발생·호흡기(압력게이지) 끼임 중 하나 이상에 해당 한 상태에서 완료 수신호까지 진행되는 경우 감점 * 순서에 맞지 않게 진행한 경우 감점(모든 수신호 포함)	-10 -10	
수색 (20)	5. 2인 1조 잭-스테이 수색 <평가관 실시신호 → 수색실시(왕복1회) → OK수신호> * 잭스테이 수색방법 부적절 감점(상호 수신호, 개별행동, 로프를 20cm 이상 띄우거나 끌고 가는 경우, 잭-스테이 수색 형태가 아닌 경우) * 수색 도중 손 이외의 신체 또는 장비가 바닥에 닿은 경우 감점<방향전환 시 제외> * 앵커 이동 시 앵커가 바닥에 끌릴 경우 감점 * 앵커 이동 시 2번 대원이 수색방향을 등지고(백워드크 등) 이동하는 경우 감점 * 순서에 맞지 않게 진행한 경우 감점(OK수신호 포함)	-10 -10	
상승 (20)	6. 평가관의 상승신호→응시자의 상승수신호→상승라인을 보며 상승→2m 안전정지(10초)→평가관의 상승신호→응시자 상승수신호→상승라인을 보며 상승→수면 부력확보→OK수신호 * 2m 안전정지 시 부력(상하±50cm) 유지하지 않을 경우 감점 * 상승라인 1m 이상 이탈 시 감점 * 왼손으로 공기조절장치를 조작하지 않거나 상승 중 하강 후 재상승 상승자제 및 상승속도 부적절한 경우 감점 * 상승라인을 잡을 경우 감점 * 상승라인을 보지 않을 경우 감점 * 상승 후 부력조절기(BC)에 부력확보 미실시한 경우 감점 * 순서에 맞지 않게 진행한 경우 감점(모든 수신호 포함)		-20
공통 사항	※ 각 진행단계의 감점이 진행단계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진행단계 점수 0점(추가 감점 불가) ※ BC 내에 웨이트를 넣는 등 부정확한 방법으로 평가에 임한 경우 실격 ※ 평가 중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행동 및 안전에 관한 사항 위반 시 실격		

평가 결과

100

제한시간 : 일부 항목 제한시간 부여

합 격

불합격

인명구조사 2급(수난) 실기 종목별 평가표

○ 수상 인명구조

(제한시간 : 1분 10초)

응시번호	성 명	(서명)	평가관	(서명)
------	-----	------	-----	------

○ 준비물 및 평가 장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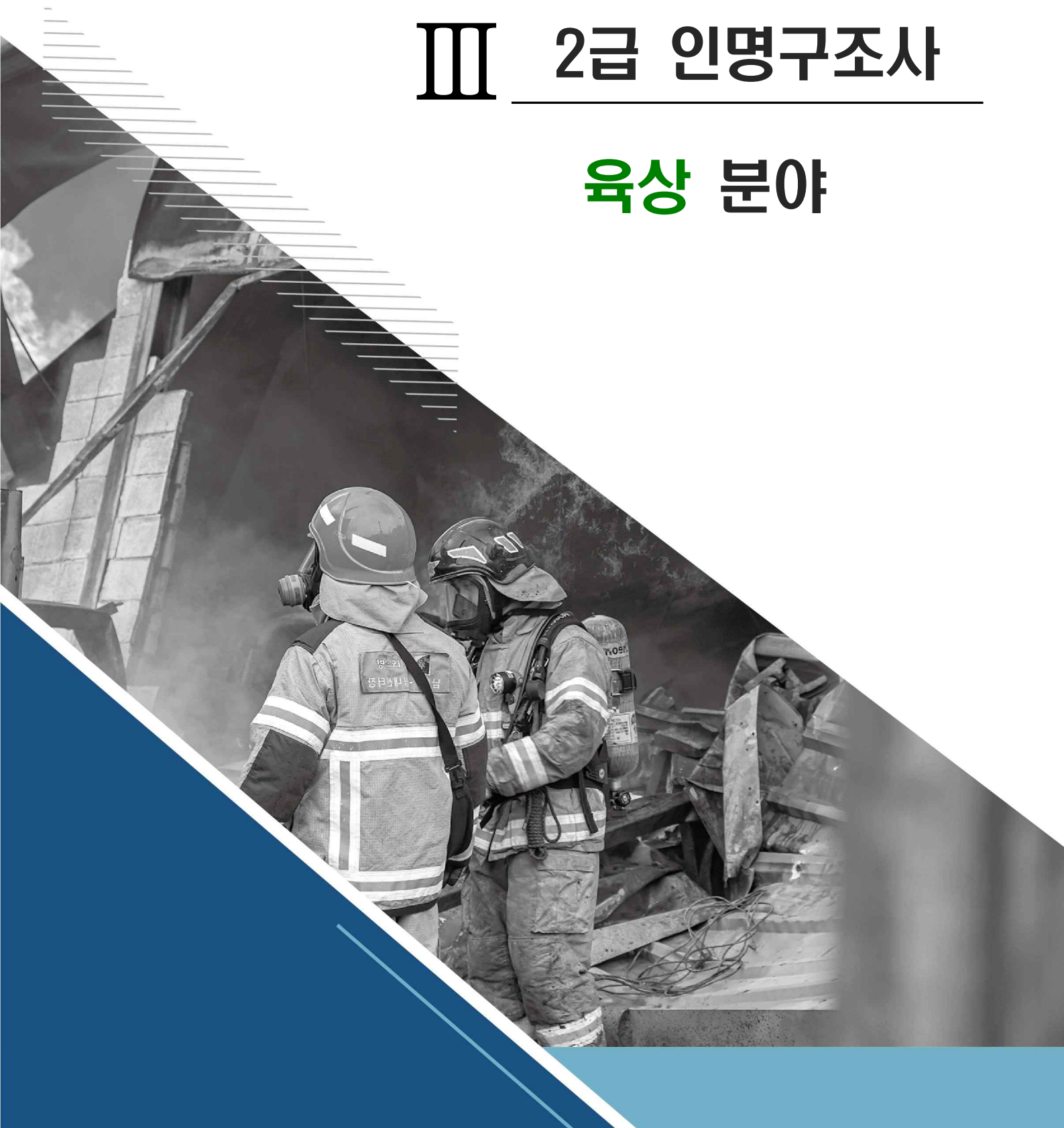
- 준 비 물 : 수모 또는 잠수모, 마스크, 스노클, 오리발(스킨 핀), 습식잠수복(2mm 이상, 튜닉 · 반팔제외)
- 평가장비 : 수난용 마네킹(25kg), 수중원형장애물(지름 약1m)

진행 단계	평 가 항 목	항목 점수	평가 점수
준비	응시자는 개인(평가)장비를 착용하고 시작지점에 정위치 한다. * 모든 장비는 평가 실시 전 응시자 스스로 확인하고 문제가 있을 시 평가관에게 요구한다.		
점검 (10)	1. 스킨장비 착용(슈트, 오리발, 마스크, 스노클)한 상태에서 시작 → 입수지점 안전확인 → 입수(안전입수) → 장비의 이상유무 점검 → 평가관에게 수신호(OK) * 입수지점 확인을 하지 않거나 수면을 바라보지 않고 형식적으로 실시한 경우 감점 * 얹아입수(안전) 동작이 부적절한 경우 감점 * 순서에 맞지 않는 경우 감점 ⇒ 평가관은 OK 수신호를 응시자의 출발준비 완료 신호로 간주	-4 -3 -3	
이동 (30)	2. 수면이동 → 수중장애물 통과 → 수면이동 * 시선을 전방으로 한 영법에는 제한을 두지 않으나, 수면 이동 시 스노클을 물지 않거나 전방을 바라보지 않는 경우 감점, 잠영으로 계속 이동하는 경우 감점 ⇒ OK 수신호를 한 응시자의 손이 벽면(턴월)에서 떨어지면 평가관은 즉시 시간측정 시작 * 수중장애물 통과 시 장비 및 신체 일부가 장애물과 닿는 경우 감점 * 수중 장애물을 통과하지 않거나 수중 장애물 통과 시 장애물을 손(팔)으로 잡고 통과하는 경우 진행단계 “0점” 처리	-10 -20	
인양 (30)	3. 반환점에 있는 구조대상자(마네킹)를 인양 * 잠영으로 마네킹을 한 번에 인양하지 못한 경우 감점 ⇒ 인양 시 신체가 바닥에 닿거나, 반환점의 벽면을 닿는 것은 허용(감점 아님) * 인양 완료시점에서 방향전환을 위해 벽면이나 데크 또는 라인을 잡거나 미는 경우, 인양 완료시점과 운반출발 사이에 멈춰선 경우 감점	-20 -10	
운반 (30)	4. 출발점까지 운반 * 마네킹의 양 겨드랑이를 파지하지 않고 다리, 목, 한 겨드랑이 등을 잡고 이동하는 경우 감점 * 응시자의 구강 또는 마네킹의 구강(입)이 물에 잠긴 경우 매회 10점 감점 <진행단계 “30점” 까지 감점> * 운반 시(인양부터 도착까지) 마네킹을 바라보지 않는 경우 감점 ⇒ 단, 진행방향을 확인하는 경우 제외하며, 운반 시에는 스노클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응시자 · 마네킹 구강이 물에 잠긴 상태에서 3초 이상 이동 시 실격 * 마네킹 운반 중에 라인 또는 벽(바닥)을 잡거나 멈춰 선 경우 실격	-5 매회 -10 -5	
공통 사항	* 평가 도중 장비(오리발, 마스크, 스노클)가 이탈되는 경우 해당 진행단계 0점 처리 * 각 진행단계의 감점이 진행단계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진행단계 점수 0점 처리 * 평가 중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행동 및 안전에 관한 사항 위반 시 실격		

평 가 결 과		100	
제한시간 : 1분 10초(이동→운반완료)	합 격	불합격	
최종 평가기록 : 분 초			

Ⅲ 2급 인명구조사

육상 분야



인명구조사 2급(육상) 실기평가 유의사항

1. 유의사항

1. 평가관은 훈령에 의해 지정된 자로 하며, 평가표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평가의 원활한 운영과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평가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비공개로 관리하며, 평가 종료 후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한 자에 한하여 공개한다.
※ 평가관은 시험운영에 관한 서약서에 서명하여야 한다.(보안, 공정성, 언행, 행동, 안전 수칙 등)
2. 평가관은 평가 시작 전 안전점검 및 안전요원의 배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우려 시 즉시 평가를 중지하고 정위치 한다.
3. 평가 중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행동 및 안전에 관한 직접적인 사항 위반* 시에는 실격처리 한다.
* 응시자 본인의 안전, 평가 결과물, 응시자의 불안정한 행동 등으로 해설집의 내용을 준용하여 평가관이 판단한다.
4. 평가관 및 응시자는 본인 여부(응시자의 응시표 및 신분증)를 상호 확인해야 한다.
5. 시험 접수 후 응시자는 무단행동 금지 및 평가관(운영요원)의 통제에 따라야 하고, 시험에 방해되는 행동을 하는 자는 퇴장조치 할 수 있다.
6. 모든 평가는 평가관의 실시 지시에 복종 후 실시하고 완료 후 평가관에게 완료 보고 후 평가관의 지시에 따르며, 제한시간 내에 실시하는 평가는 평가관이 종료(정지) 신호를 알리면 즉시 모든 행동을 정지하고 평가관의 통제에 따른다. (별도의 절차가 없는 경우에 한하며, 평가 종료 신호 후 점수에 영향을 끼치는 행동을 하는 경우 부정행위 실격처리)
7. 평가항목 중 세부항목 미수행하거나 부적절 또는 순서에 준하여 해당 항목을 실시하지 않고 다음 항목을 진행하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 “0” 점 (별도의 평가 기준이 없는 경우에 한함)
8. 평가가 시작되면 종료 전까지 재평가를 허용하지 않는다. (단, 충분한 장비점검을 하였음에도 시험 도중 평가장비 결함 발생 시 평가관의 확인 후 재평가를 허용한다.)
9. 평가 시 실기평가장에서 준비하는 평가장비에 대해서는 개인장비 사용을 제한한다. (단, 해설집에 개인장비 사용이 가능하다고 명시한 평가장비는 예외로 한다.)
10. 시험종료 후 시험장비는 원위치시켜야 한다.

2. 평가 진행방법

1. 인명구조사 2급(육상) 실기평가는 기본역량평가 1개 종목과 구조기술평가 5개 종목으로 총 6개 종목이며 기본역량평가를 통과하여야 구조기술평가에 응시할 수 있다.

구 분		평 가 종 목
인명구조사 2급(육상)	기본역량평가	○ 기초체력측정
	구조기술평가	○ 로프 하강 및 등반 ○ 수직구조 ○ 맨홀 인명구조 ○ 수평구조 ○ 교통사고 인명구조(에어백, 유압장비)

2. 교통사고 인명구조에서 에어백과 유압장비 중 추첨을 통하여 1개 종목을 실시한다.
3. 종목별 평가방법은 단계적 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세부평가항목 진행은 평가관의 지시에 의한다.
4. 평가 시작 전 장비점검 등 평가 준비를 위한 시간 약 5분을 응시자에게 제공한다.
5. 감점합계가 60점 초과 및 제한시간을 초과한 경우 시험을 중지한다.
6. 최종합격은 기본역량평가 합격 후 구조기술평가 평가종목별 40점 이상에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하여야 한다.
7. 각 진행단계의 감점이 해당 진행단계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진행단계 점수는 0점 처리 (단, 공통사항에 감점기준 기재된 경우 별도 감점 적용)

인명구조사 2급(육상) 총괄 채점표

1. 응시자 인적사항

응시번호		소 속		직 급		성 명	
------	--	-----	--	-----	--	-----	--

2. 평가항목 및 점수

구 분	평 가 종 목	종 점 목 수	평 점 가 수	비 고
기본역량 평 가	기초체력측정	합/불		
구조기술 평 가	로프 하강 및 등반	100		
	수직구조	100		
	맨홀 인명구조	100		
	수평구조	100		
	교통사고 인명구조(에어백, 유압장비)	100		1개 종목 추첨 실시

최 종 평 가 결 과					
합격		불합격		총점 (평균)	()

인명구조사 2급(육상) 기본역량 평가표

○ 기본역량평가(기초체력)

응시번호	성 명	(서명)	평가관	(서명)
------	-----	------	-----	------

○ 준비물 및 평가 장비

- 준 비 물 : 기동복(활동복, 편의복 가능), 기동화(운동화 가능)
- 평가장비 : 앰프(왕복오래달리기 음원)

종 목	평 가 항 목
기초체력	20m 코스의 양쪽 끝 선에 테이프나 분필로 선을 긋고 응시자 간 방해가 되지 않도록 폭 1m 이상 간격을 둔다. - 음원의 ‘출발’ 신호에 맞춰서 출발한다. - 먼저 도착한 응시자는 ‘출발’ 신호가 다시 울릴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 신호가 울리면 다시 반대쪽 라인 끝을 향해 달린다. - 매 분마다 점점 빨라지도록 정해진 속도에 맞추어 20m 거리를 60회 이상 달린다. - 왕복하는 동안 정해진 주기에 따라 속도가 빨라진다. - 동시에 출발한 응시자가 신호음이 울릴 때까지 라인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검사는 종료되고 이때까지 달린 20m 거리의 횟수를 기록한다. ※ 음원시간 내 20m 라인을 통과하지 못하거나 미리 출발하는 경우 <u>평가관 2회 구두 및 손을 들어 경고하고, 3회째 평가를 중지하고 직전까지의 횟수를 기록한다.</u> ※ <u>60회째에는 음원시간 내 도착하지 못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u> - 음원 이후 신체(양발)가 완전히 라인을 넘은 경우: 경고 1회 적용(3회째 경고인 경우는 <u>실격</u>) - 음원 이후 신체(양발)가 완전히 라인을 넘지 않은 경우 실격: 경고 횟수와 상관없이 <u>실격</u> ※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항으로 측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 재측정 기회를 추가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실수로 넘어진 경우도 재측정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평 가 결 과

기초체력 : 60회 이상 ☐ , 60회 미만 ☐	합 격	불합격
--	-----	-----

인명구조사 2급(육상) 실기 종목별 평가표

○ 로프하강 및 등반

(제한시간 : 10분)

응시번호	성명	(서명)	평가관	(서명)
------	----	------	-----	------

○ 준비물 및 평가 장비

- 준비물 : 기동복(활동복)/기동화(산악용 구조화), 안전벨트(가슴등장기·카우스 테일이 포함된 상·하 일체형 안전벨트), 구조장갑, 구조헬멧
- 평가장비 : 로프(11mm×35m), 안전로프(11mm×4m), 자동확보장비, 이동식 추락방지장비, 등강기(손1, 풋 스텝1), 카라비너(2), 푸르직 코드

진행 단계	평가 항목	항목 점수	평가 점수
준비	응시자는 평가장비를 휴대하여(로프는 3회 이상 감아 정리, 안전로프는 매듭지어 손에 휴대한 상태로 시작지점에 정위치 한다. ※ 모든 장비는 평가실시 전 응시자 스스로 확인하고 문제가 있을 시 평가관에게 요구한다. ※ 개인 준비물 중 일부 미 착용(정렬)한 상태로 정위치한 경우 경고, 미조치 시 실격		
준비 및 설치 (30)	1. “현장안전확인” → 확보물에 안전로프 설치(말뚝+움매듭) → 안전지역에서 푸르직 코드로 자기 확보 → 길이조절 및 안전로프 나비매듭 * 안전지역을 벗어나서 자기확보를 할 경우 실격 * 안전벨트의 목부, 가슴, 등 외 장비걸이에 자기확보 걸착할 경우 감점 후 경고, 미조치 시 실격 * 각 매듭 및 푸르직 매듭 부적절, 자기확보 길이조절이 부적절 시 감점(해설집 참고)	-5 -5	
	2. 1차 확보물에 말뚝매기 확보하고 로프 끝 이중움매듭 후 로프 투척 * 로프투척 시 투척지점을 확인치 않거나 “로프 또는 낙출” 복창을 하지 않을 경우, 투척한 로프가 엉켰을 때, 조치를 하지 않고 진행한 경우 감점 * 말뚝매듭 두 줄이 꼬이거나 올라탄 경우 감점 * 이중움매듭 길이(10~30cm) 아닐시 감점 * 말뚝매듭이 아닐 시 감점 후 경고, 미조치 시 실격	-5	
	3. 로프 여유길이(1~3m) 조절 후 2차 확보물에 말뚝매기 및 움매듭 실시 * 매듭 부적절 또는 로프의 여유 길이(초과 또는 미만)를 실제 확인치 않고 형식적으로 실시한 경우 감점 (해설집 참고) * 말뚝매듭이 아닐 시 감점 후 경고, 미조치 시 실격	-5	
	4. 자동확보장비·이동식 추락방지장비 결합 후 장비점검(자동확보장비, 이동식추락방지장비 작동상태 점검) 및 자기확보 해제 * 자동확보장비 및 확보장비의 결합이 잘못된 경우 감점 후 경고, 미조치 시 실격 * 위험지역에서 자동확보장비, 이동식 추락방지장비 결합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확보 해제 시 실격	-10	
	5. 하강준비는 상부 가장자리 부분에서 시작하고 “하강준비 끝” 복창 후 평가관의 지시에 따라 뒷걸음 또는 미끄러져 내려가는 자세로 하강 * 자기확보를 분리하지 않고 “하강준비 끝” 보고 시 감점 * 하강 시 하강자세 불안정(해설집 참고) 또는 점프하거나 실수로 미끄러짐, 손이 로프와 모서리 사이에 끼일 경우 감점 * 하강 시 이동식 추락방지 장비 안쪽으로 팔이 들어가는 경우 감점 후 경고, 미조치 시 실격 * 이동식 추락방지 장비에 락(정지)이 걸리는 경우 이를 제한시간(평가시간 10분) 내 조치하지 못하는 경우 실격	-10	
하강 및 정지 (30)	6. 하강 정지 지점에서 정지 * 발이 정지선을 통과하지 않고 정지할 경우 감점 및 경고, 계속 진행하는 경우 실격 * 정지하지 못하고 바닥에 추락 또는 하강지역 지면 바닥에 신체가 닿을 경우 실격	-10	
	7. 자동확보장비 잠금 상태에서 정지자세 후 양팔을 벌리고 “하나, 둘, 셋” 복창 * 정지자세 시 자동확보장비 잠금 미실시 감점 후 경고, 미조치 시 실격 * 자동확보장비 잠금 전 제동손 이탈 시 감점 * 복창 미실시 시 감점	-10	
등반 (20)	8. 등강기 걸착 → 가슴등강기 걸착 → 자동확보장비 해제 * 진행수가 맞지 않거나 등강기에 주로프(하강로프) 연결하지 않은 등등장비 걸착 위치가 부적절한 경우(해설집 참고) 감점	-5	
	9. 장비교체 완료되면 “등반준비 끝” 복창 후 평가관의 지시에 등반실시 * “등반준비 끝” 복창을 하지 않거나 평가관의 등반지시(평가관 점검)를 받지 않고 등반하는 경우 감점 * 몸이 회전하여 벽에 부딪히는 경우 감점, 단, 상부 가장자리 올라갈 때 신체가 벽에 닿는 것은 허용 * 등반 시 이동식 추락방지장비의 충격흡수 부분이 두 팔 사이를 통과하는 위치에 있지 않은 경우 감점 후 경고, 미조치 시 실격 * 이동식 추락방지 장비가 허리 높이 아래에 위치할 경우 감점 후 경고, 미조치 시 실격 * 보조로프가 늘어진 상태로 2회 등반 시 감점 후 경고, 미조치 시 실격	-5 -5 -5	
	10. 등반완료 → 자기 확보 실시 → 등반장비 해제 * 자기확보를 하지 않고 장비해제 시 감점 후 경고, 미조치 시 실격	-10	
	11. 로프끌어올림→로프정리(나비사리기)→자기 확보 해제→시작지점 정위치 “실시완료” 복창(모든 장비회수) * 위험지역에서 자기확보를 해제하고 안전지역으로 이동 시 실격 * 철수 순서가 맞지 않으면 감점 * 로프정리 상태가 정리매듭 중심으로 양쪽길이가 10cm 이상 차이날 경우 감점 * 로프를 끝줄부터 두겹으로 사리지 않거나 로프정리 매듭을 3회 이상 감지 않은 경우 감점 * 로프를 정리(나비사리기)하지 않고 종료하는 경우 진행단계(철수) ‘0’ 점 처리	-5 -5	
공통 사항	※ 로프를 밟거나 발로 미는 행위(최종 평가점수에서 5점 감점) ※ 각 항목 모든 카라비너 잠금상태가 불량(최종 평가점수에서 1개당 5점 감점) ※ 안전지역에서 장비 떨어트림(중점에서 1개당 5점 감점) ※ 위험지역에서 장비 추락 시 해당 장비 사용 불가(최종 평가점수에서 1개당 20점 감점, 임무수행 불가 시 실격) ※ 각 항목의 감점이 항목점수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항목점수 0점(추가 감점 불가능) ※ 평가 중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행동 및 안전에 관한 사항 위반 시 실격	수량 수량 수량 수량	총감점

평가 결과			100	
제한시간 : 10분 (준비 및 설치 → 철수)			합격	불합격
최종 평가기록 : 분 초				

인명구조사 2급(육상) 실기 종목별 평가표

○ 수직구조

(제한시간 : 15분)

응시번호	성 명	(서명)	평가관	(서명)
------	-----	------	-----	------

○ 준비물 및 평가 장비

- 준 비 물: 기동복(활동복), 기동화(산악용 구조화), 안전벨트(상·하 일체형), 구조장갑, 구조헬멧
- 평가장비: 로프 20m(1), 코드슬링 7~8mm x 1.4m(1), 테이프슬링 25mm x 2m(1), 25mm x 4m(3), 25mm x 8m(1), 삼각줄 4.5m(2), 코드슬링 7~8mm x 2m(4), 자동확보장비(1), 싱글도르래(2), 더블도르래(1), 확보판(1), 스위벨(1), 카라비너(7), 등강기(1), 바스켓 들것(1), 마네킹(1, 육상용 25kg)

진행 단계	평 가 항 목	항목 점수	평가 점수
준비	응시자는 평가장비를 지정된 구역 안에 장비별로 정렬하고 시작지점에 정위치한다. * 모든 장비는 평가실시 전 응시자 스스로 확인하고 문제가 있을 시 평가관에게 요구한다. * 개인 준비물 중 일부 미 착용(정렬)한 상태로 정위치한 경우 경고, 미조치 시 실격		
들것 고정 (50)	1. “현장안전 확인” 복창 * 복창 미실시 및 형식적인 확인 행위 감점		-5
	2. 들것 1차 고정(골반부) * 골반부 테이프슬링 형태(매듭)가 부적절한 경우 개수당 감점	개수	-5
	3. 들것 1차 고정(가슴부) * 가슴부 테이프슬링 형태(매듭)가 부적절한 경우 개수당 감점	개수	-5
	4. 들것 1차 고정(다리부) * 다리부 테이프슬링 형태(매듭)가 부적절한 경우 개수당 감점	개수	-5
	5. 들것 2차 고정 * 2차 고정 테이프슬링 형태(매듭)가 부적절한 경우 개수당 감점	개수	-5
	6. 삼각줄 결착 및 푸르직 매듭 설치 * 삼각줄 및 코드슬링 형태(매듭 등)가 부적절한 경우 개수당 감점	개수	-5
	* 평가 항목 순서(1-6)에 맞지 않게 진행 한 경우 감점		-10
	* 구조대상자의 들것고정 평가항목 중 일부를 미실시한 상태로 수직구조 진행단계를 시작한 경우 실격		
	* 각 항목의 감점이 진행단계(50)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진행단계 ‘0’ 점 처리		
수직 구조 (50)	7. 확보물에 확보지점 설치, 카라비너 연결, 확보판 연결 <확보지점: 테이프슬링(2m)를 사용하여 랩3폴2를 만든다. / 3줄 중 2줄을 카라비너에 결착> * 확보지점(랩3폴2) 매듭 형태가 부적절한 경우(해설집 참고) 감점		-5
	* 확보지점(랩3폴2)을 설치하지 못하였을 경우 실격		
	8. 로프 매듭(두겹8자) → 상단확보점에 도르래 및 로프 결착, 스위벨 연결, 바스켓 들것 연결 * 로프 매듭(두겹8자)를 먼저 하지 않을 경우 감점		-5
	* 로프의 방향과 도르래의 위치가 뒤틀려 로프 마찰을 일으키는 경우, 매듭 틈 및 꼬임이 발생 할 경우, 로프 매듭의 형태 등이 부적절하거나 고리의 크기가 카라비너보다 큰 경우 감점		
	9. 로프를 자동확보장비에 연결 → 확보판에 결착 → 로프 장력 * 자동확보장비가 뒤집어진(통과한 로프가 위쪽에 위치) 경우 감점, 장비 결착 후 손으로 당겨 주로프 사 전장력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도르래 바퀴 이외부분(측면판)에 힘받을 경우, 로프의 방향과 도르 래의 위치가 뒤틀려 로프 마찰을 일으키는 경우 감점		-5
	* 순서에 맞게 하지 않았을 경우, 자동확보장비에 로프를 반대(안티에라)로 설치한 경우 감점 및 경고, 이를 수정하지 않고 다음 항목으로 진행한 경우 실격		-5
	10. 코드슬링을 이중피셔맨매듭으로 연결 → 주로프에 코드슬링 푸르직 매듭 실시 * 이중피셔맨 매듭이 부적절(잔여로프 3cm 미만, 매듭 틈 발생), 감아매기 부적절(3회 미만, 틈 발생, 5:1시스템 설치완료 시까지 제동역할 못함, 꼬임 발생) 시 감점		-5
	* 푸르직 매듭 시 코드슬링이 연결된 매듭 부위가 주로프 또는 카라비너에 닿는 경우 감점		-5
	11. 도르래 등을 이용 5:1 직접 당김 장치 설치 * 도르래의 로프가 한바퀴 이상으로 꼬이거나 자동확보장비와 도르래가 심한 마찰을 일으킬 경우 감점		-5
	* 로프 끝 이중웜매듭 미실시 및 부적절(잔여로프 10cm ~ 30cm가 아닐 경우, 매듭 틈 발생, 꼬임, 잘못된 이중 웜매듭) 감점		-5
	* 5:1직접당김시스템 도르래의 설치가 안되거나 배열이 다른 배열시스템을 설치할 경우 실격		
	12. 바스켓 들것을 초기 인양하여 수평상태 확인 및 지면에 하강 후 수정 (응시자가 초기인양(손, 등강기 둘 다 허용) 후 들것 수평상태 양호로 판단되면 수정 없이 계속 진행 가능) * 들것 각도 수정 후 들것 머리쪽과 다리 쪽의 기울기 차가 어느방향이든 20도 이상일 경우 감점		-5
	* 들것 각도 수정 후 들것 좌,우 수평이 맞지 않을 경우 감점		
	* 도르래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들것 수평을 확인하는 경우 12번 평가항목 전체 감점		
	* 초기 인양 후 수평확인을 위하여 하역 시 들것이 지면으로 충격 및 추락할 경우 실격		
	* 들것 각도 수정 후 들것 머리쪽이 다리쪽보다 낮을 경우 실격		
	13. 바스켓 들것 최종 50cm 이상 인양 후(주로프에서 등강기를 해체한 후) “실시완료” 복창 * 등강기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인양하는 경우, 푸르직 1회 이상 미이동 및 이동 시 등강기가 주로프에 결착 상태일 경우 감점		-5
	* 들것의 최저부 기준 인양 높이가 바닥에서 50cm 미만인 경우 감점		
	* 인양을 실시하지 않거나 바스켓 들것이 지면으로 충격 및 추락할 경우 실격		
공통	* 로프를 밟거나 발로 미는 행위(최종 평가점수에서 1회당 5점 감점)	횟수	횟수
	* 카라비너 잠금 상태 불량(최종 평가점수에서 1개당 5점 감점)	개수	개수
	* 12번 평가항목 이전에 수평확인을 실시한 경우 해당 진행단계 ‘0’ 점 처리		
	* 평가 중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행동 및 안전에 관한 사항 위반 시 실격(해설집)		
[참고] 최종 매듭 이후 잔여로프 길이는 10~30cm 이어야 하나, 들것고정용 테이프슬링, 코드슬링은 제외			
평 가 결 과		100	
제한시간 : 15분 (들것고정 → 수직구조)		합 격	불합격
최종 평가기록 : 분 조			

총감점

인명구조사 2급 실기 종목별 평가표

○ 맨홀 인명구조

(제한시간 : 7분)

응시번호	성명	(서명)	평가관	(서명)
------	----	------	-----	------

○ 준비물 및 평가 장비

- 준비물 : 기동복(활동복), 기동화(산악용 구조화), 방화복 상의, 구조헬멧, 구조장갑, 공기호흡기 세트
- 평가장비 : 카라비너(5), 도르래(더블, 싱글), 로프[11mm/15m(2)], 로프(11mm/30m), 가스측정기, 랜턴, 구조대상자용 안전벨트, 마네킹, 역회전방지 도르래

진행 단계	평 가 항 목	항목 점수	평가 점수
준비	응시자는 평가장비(모든 로프는 매듭을 풀지 않은 상태)를 지정된 구역 안에 장비별로 정렬하고 시작지점에 정위치 한다. * 모든 장비는 평가실시 전 응시자 스스로 확인하고 문제가 있을 시 평가관에게 요구한다. * 개인 준비물 중 일부 미 착용(정렬)한 상태로 정위치한 경우 경고, 미조치 시 실격		
준비 및 설치 (40)	1. “현장안전확인” → “가스측정 하나 둘 셋” → “유해가스 있음” * “현장안전확인” / “가스측정” / “유해가스 있음” 복창하지 않은 경우 감점 - 현장안전확인 및 가스측정 정확하게 하지 않을 경우(해설집 참고)		-5
	2. 역회전방지 도르래(프로트랙션 등)를 이용하여 4:1 도르래 설치 * 역회전방지 도르래의 위치가 부적절(고정점이 아닌 이동점에 설치할 경우)하거나 반대로 설치 시 감점 및 1회 경고 후 미조치 시 실격		-5
	* 매듭(두겹 8자)의 고리 크기가 카라비너보다 큰 경우 감점		-5
	* 로프 끝에 이중웁매듭 실시하지 않는 경우 감점		-5
	* 4:1 도르래 시스템이 안된 경우 감점		-5
	3. 움직도르래와 연결된 카라비너(연결점)에 유도로프(두겹8자)설치, “낙줄” 및 구조대상자용 안전벨트 걸착 * 유도로프 매듭의 고리 크기가 카라비너보다 큰 경우 감점		-5
	* 유도로프 설치 또는 구조대상자용 안전벨트를 미걸착한 경우 감점 후 응시자가 직접 조치		-5
	* “낙줄” 복창 미실시 또는 유도로프 · 안전벨트를 움직도르래와 연결된 카라비너에 미걸착 시 감점		-5
	4. 공기호흡기 실린더개방 → 하단부에 매듭(고정매듭+웁매듭) → 보조자(평가관)에 인계 → 면체 및 헬멧착용 → 랜턴을 이용 구조대상자 확인(“구조대상자 확인”) → “진입준비완료” 복창 → 평가관의 “진입” 지시에 맨홀진입 * 실린더 개방 부적절 경우 감점(해설집 참고)		-5
	* “구조대상자 확인”, “진입준비완료”, “진입” 중 일부 미복창 시 감점		-5
진입 및 구조 (60)	* 공기호흡기를 맨홀 진입 직전부터 양압 호흡을 하지 않은 경우 실격 → 공기호흡기 면체 착용 시점부터 양압으로 활동 가능		
	* 잔압부족으로 인한 경보음 발생 시 실격		
	* 실린더 개방 시 0링 또는 공기호흡기의 이상으로 임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실격 <0링 및 용기 응급조치 가능>		
	5. 구조대상자 의식 확인 → 보조마스크 착용 실시 * 의식 확인 전 구조대상자의 팔을 먼저 올리거나 보조마스크 착용상태 (해설집 참고) 부적절 시 감점 → 내부 활동으로 인해 구조대상자의 보조마스크 이탈 시 10초 이내 조치하는 경우는 감점사항 아님		-10
	6. 도르래시스템에 설치한 유도로프 견인 → 안전벨트 및 유도로프 분리 * 맨홀 진입 후 역회전 방지 도르래 캡 잠김으로 연결점이 내려오지 않을 경우(평가관 요청시 조치) 또는 로프 꼬임 등으로 인해 연결점이 내려가지 않을 경우(응시자 조치) 감점		-10
	* 잘못된 도르래 시스템, 주로프가 시스템으로부터 이탈되는 경우 감점(단, 1회 경고 후 미조치시 실격)		-5
	7. 마네킹에 구조대상자용 안전벨트를 착용 → 시스템에 걸착 → 유도로프를 등에 있는 D형고리에 걸착 후 “실시완료” 복창 * 구조대상자용 안전벨트가 뒤집혔거나 거꾸로 착용시킬 경우 및 착용상태가 불량한 경우(끈꼬임, 걸착상태) 감점		-10
	* 최종적으로 유도로프가 구조대상자 안전벨트의 등에 있는 D형고리에 걸착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점		-10
	* 구조대상자 안전벨트 모두 결속(양팔 · 가랑이)시키지 않고 종료하는 경우 감점 및 경고, 미조치 시 실격		-5
	* 구조대상자 안전벨트 걸착(양팔 · 가랑이) 후 양팔을 내리지 않고 종료하는 경우 감점		
공통 사항	* 로프를 밟거나 발로 미는 행위(최종 평가점수에서 1회당 5점 감점)	개수	
	* 각 항목 모든 카라비너 잠금 상태 불량(최종 평가점수에서 1개당 5점 감점)	개수	
	* 안전지역에서 장비 떨어트림(최종 평가점수에서 1개당 10점 감점)	개수	
	* 위험지역에서 장비 추락 시 해당장비 사용 불가(최종 평가점수에서 1개당 10점 감점)	개수	
	* 매듭의 형태(모양), 매듭과 보조매듭(ex-말뚝매기와 웁매듭)의 간격, 잔여로프의 길이, 웁매듭과 본매듭 사이 공간 등은 수직구조 종목을 준용하고 별도 감점항목이 없는 경우 최종 평가점수에서 1개당 5점 감점	개수	
	* 평가 중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행동 및 안전에 관한 사항 위반 시 실격 ⇒ 맨홀구조 구조완료 후 유도로프가 구조대상자 목에 감긴 경우, 사다리타고 내려가다가 추락하는 경우 등		

평 가 결 과			100	
제한시간 : 7분 (준비 및 설치 → 진입 및 구조)	합 격	불합격		
최종 평가기록 : 분 초				

인명구조사 2급 실기 종목별 평가표

○ 수평구조

(제한시간 : 10분)

응시번호	성명	(서명)	평가관	(서명)
------	----	------	-----	------

○ 준비물 및 평가 장비

- 준비물 : 기동복(활동복), 기동화(산악용 구조화), 안전벨트(상·하 일체형), 구조장갑, 구조헬멧, 퍼셀푸르직
- 평가장비 : 로프(11mm×40m, 11mm×20m), 확보판, 자동확보장비, 퀵드로우, 등강기(손), 푸르직 코드, 역회전방지도르래, 텐덤도르래, 더블도르래(2), 싱글도르래, 카라비너(13), 코드슬링(7~8mm)

진행 단계	평 가 항 목	항목 점수	평가 점수
준비	응시자는 평가장비(모든 로프는 매듭을 풀지 않은 상태)를 지정된 구역 안에 장비별로 정렬하고 시작지점에 정위치 한다. * 모든 장비는 평가실시 전 응시자 스스로 확인하고 문제가 있을 시 평가관에게 요구한다. ※ 개인 준비물 중 일부 미 착용(정렬)한 상태로 적위치한 경우 경고, 미조치 시 실격		
설치 (70)	1. “현장안전 확인” → 확보지점에 자기확보를 실시(퍼셀푸르직) * “현장안전확인” 을 복창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감점	-5	
	* 자기확보 미실시 또는 안정된 확보물이 아니거나 안전벨트의 복부가슴등고리 외 장비걸이, 측면고리에 자기확보를 걸착할 경우 감점 후 경고, 미조치 시 실격	-5	
	2. 로프발사총 격발자세(평가운영 상 로프총 사용불가)에서 “로프총 발사” 복창 후 5초간 대기 (로프전개 과정 “하나 ~ 다섯” 복창) 후 견인줄 전달(평가운영상 로프전달을 “로프 당기세요.” 복창으로 갈음) * “로프총 발사” 를 복창하지 않거나 발사 각도가 45° 미만인 경우 감점	-5	
	* 로프총 격발 후 “하나 ~ 다섯” 또는 “로프 당기세요.” 복창하지 않은 경우 감점	-5	
	3. 확보지점에 확보판 설치 → 자동확보장비에 로프를 연결 후 확보판에 걸착 → 손으로 당겨 로프 장력을 유지 * 상단에 설치해둔 로프에 걸착된 카라비너 및 확보지점에 주로프 또는 도르래를 걸착하는 경우 감점	-5	
	* 자동확보장비에 로프를 반대로 걸착하는 경우 감점 및 경고, 수정하지 않고 다음 항목으로 진행하는 경우 실격	-5	
	* 자동확보장비를 확보판 걸착 후 손으로 당겨 도르래설치 전 로프 장력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감점	-5	
	4. 간접당김도르래시스템(6:1)(시작매듭:에반스) 설치 후 푸르직 코드를 이용하여 로프 당김 * 직접당김시스템으로 설치하거나 간접당김시스템을 6:1로 설치하지 않은 경우 4번 평가항목 “0점” 처리		
	* 간접 도르래시스템을 2회 이상 리셋시켜 로프를 당기지 않거나 로프 장력이 미흡한 경우 4번 평가항목 “0점” 처리		
	* 도르래의 로프를 당긴 후 자동확보장비의 주로프를 당겨주지 않는 경우 운용능력이 미흡으로 감점	-5	
진입 (30)	* 에반스매듭 2회 미만 시, 푸르직 매듭한 부분이 3회 미만이거나 빠르게 정렬되지 않은 경우, 로프 끝에 이중올매듭을 하지 않는 경우 감점	-5	
	* 확보판과 도르래 사이가 한바퀴 이상 틀어지거나 밀접하여 큰 마찰을 일으킨 경우 감점	-10	
	* 도르래를 확보판에 단독으로 걸착하지 않고 주로프 카라비너에 걸착하는 경우 감점	-5	
	5. 로프 당김이 완료되면 자동확보 장비 잠금을 실시하며 “잠금확인” 을 복창 → 확보판 카라비너에 매듭(두겹 8자)을 실시하여 2차 안전확보 실시 * 2차 안전확보 전, 자동확보장비 잠금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복창 미실시 한 경우 감점	-3	
	* 2차 안전확보 시 여유로프의 길이가 50~100cm가 아닌 경우 감점, 두겹8자매듭 형태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감점	-3	
	* 2차 안전확보 미실시 하는 경우 감점 및 경고, 미조치 시 실격	-4	
	6. 도하장비 준비(등강기, 코드슬링), 진입도르래설치(텐덤, 역회전방지도르래), 안전벨트(신체)에 진입장비걸착, 역회전방지도르래 캠 잠금 → 도하장비 설치 및 2차확보(퀵드로우+자기확보줄) → “도하준비 끝” 복창 → 평가관의 지시에 도하 → 도하완료 후 자기확보 실시(카우스테일 가능) → 실시완료 * 도하장비의 코드슬링의 길이가 응시자 신체와 맞지 않는 경우 감점	-5	
	* 2차확보 시 자기확보줄 길이조절을 하지 않는 경우 감점		
	* 순서에 맞지 않게 진행할 경우 6번 평가항목 “0점” 처리		
	* 미실시 한 항목이 있는 상태에서 “도하준비 끝” 복창하는 경우 경고, 미조치 시 실격	-15	
공통 사항	* 도하완료 후 자기확보 미실시한 경우 감점 및 경고, 미조치 시 실격		
	* 도하중 등강기가 역회전방지도르래 사이에 낀 경우 감점	-10	
	* 역회전방지 도르래를 반대 또는 뒤집힌 방향으로 설치하고 “도하 준비 끝” 을 복창 한 경우 감점 및 경고, 미조치 시 실격		
	* 도하완료 후 자기확보 미실시한 경우 감점 및 경고, 미조치 시 실격		
	* 도하 중 신체가 위험지역 지면에 닿은 경우 실격		
	※ 로프를 밟거나 발로 미는 행위(최종 평가점수에서 1회당 5점 감점)	수량	총감점
	※ 각 항목 모든 카라비너 잠금 상태 불량(최종 평가점수에서 1개당 5점 감점)	수량	
	※ 안전지역에서 장비 떨어트림(최종 평가점수에서 1개당 5점 감점)	수량	
	※ 위험지역에서 장비 추락시 해당장비 사용 불가(최종 평가점수에서 1개당 20점 감점, 평가 진행 불가 시 실격)		
	※ 모든 매듭의 형태가 적절하게 유지되지 않은 경우 감점(최종 평가점수에서 1개당 10점 감점) <도하장비 코드슬링 제외>		
	* 매듭의 형태(오양), 매듭과 보조매듭(ex-말뚝매기와 올매듭)의 간격, 잔여로프의 길이 등은 수직구조 종목 준용	수량	
	※ 각 항목의 감점이 항목점수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항목점수 0점(추가 감점 불가능)		
	※ 평가 중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행동 및 안전에 관한 사항 위반 시 실격		
	평가 결과	100	
제한시간 : 10분 (설치 → 진입)		합 격	불합격
최종 평가기록 : 분 초			

인명구조사 2급 실기 종목별 평가표

○ 교통사고 인명구조(에어백)

(제한시간 10분)

응시번호	성명	(서명)	평가관	(서명)
------	----	------	-----	------

○ 준비물 및 평가장비

- 개인장비 : 기동복(활동복), 기동화(산악용 구조화), 방화복상의, 허리벨트(선택), 구조헬멧, 보안경, 구조장갑, 팔꿈치·무릎보호대(선택)
- 평가장비 : 고임목 4개, 휴대용원치, 에어백세트, 마네킹, 버팀목(가로 10cm×세로 10cm×길이 50cm)

진행 단계	평가 항목	항목 점수	평가 점수
준비	응시자는 개인장비를 착용 후, 평가장비를 지정된 구역 안에 정렬하고 시작지점에 정위치 한다. * 모든 장비는 평가실시 전 응시자 스스로 확인하고 문제가 있을 시 평가관에게 요구한다. ※ 개인 준비물 중 일부 미 착용(정렬)한 상태로 정위치한 경우 경고, 미조치 시 실격		
현장 확인 (5)	1. “현장안전확인” 복창 → “차량 내·외부 위험요소 확인” 복창 → 구조대상자 파악 → “차량 하부 구조대상자 1명” 복창 * 복창 미실시 시 감점 * 순서에 맞지 않게 진행하거나 일부항목을 미실시 또는 정확한 동작을 취하지 않고 형식적인 경우		-5
안전 조치 (20)	2. 유관기관 및 대원에게 “차량을 통제하십시오”, “소화기를 배치하십시오” 복창하여 지시 * 복창 미실시 시 감점 3. “고임목 고정” 복창, 차량 좌우 앞/뒷바퀴에 고임목을 밀착하여 고정(4개) * 복창 미실시 시 감점 * 고임목을 밀착하지 않거나 고임목의 설치 방향이 통일되지 않는 경우 또는 고임목을 뒤집어서 설치하는 경우 감점 * 고임목 고정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진행단계(20점) 0점처리 및 경고, 미조치시 실격 4. “차량안정화 확인” 복창 → 운전석 문 개방 → 차량내부를 확인하며 “기어(P)확인”, “시동정지확인”, “제동장치확인” 복창 * 복창 미실시 시 감점 *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복창만 한 경우 감점, 차량내부를 확인할 때 차량에 탑승하거나 신체로 차량에 하중을 증가시키는 경우 감점		-5 -10 -5
응급 처치 (5)	5. “괜찮으십니까? 어디가 가장 불편하십니까?” 복창하며 구조대상자의 의식확인 후 구급대원에게 “응급처치를 실시하십시오.” 복창하여 요구 * 복창 미실시 시 감점 * 구조대상자의 신체를 접촉한 경우 감점		-5
원치 운용 (20)	6. “휴대용원치 장비점검” 복창 후 장비를 점검하고 순서에 맞게 설치 [순서] 원치 설치 → 차량에 와이어 결착 → 원치에 와이어 결착 → 걸림장치 작동 → 레버조작 → 적절한 장력 유지(완료) * 복창 미실시 시 감점 * 순서에 맞지 않게 진행하거나 조작레버 등 작동능력이 미흡한 경우 감점 * 휴대용원치 미설치 또는 와이어 연결 부적절로 기능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음 단계로 진행한 경우 해당 진행단계(20점) 0점 처리 및 경고, 미조치시 실격		-5 -15
에어백 운용 및 구조 (50)	7. “에어백 장비점검” 복창 후 압력게이지 등 장비를 점검하고 순서에 맞게 결합·설치 [순서] 압력조절기와 실린더 결합(사전 결합상태로 실시) → 압력조절기와 조정기연결 → 조정기와 에어백 연결 → 실린더 개방 → 공기압력조절(7~8bar) → 에어백 위치선정 및 버팀목준비 * 복창 미실시 시 감점 * 순서에 맞지 않게 진행하거나 장비결합능력이 미흡한 경우 감점 * 공기압력이 7~8bar 범위를 벗어나거나 호스가 분리되는 경우 감점 * 구조대상자의 위치를 판단하지 않은 에어백의 인양 위치 및 검침 상태가 부적절한 경우 감점 8. 에어백조작 및 버팀목설치 → 차량 인양 후 “실시완료” 복창 * 한 에어백만을無理하게 사용하거나 상부 에어백 조작을 먼저 한 경우 감점 * 한 번에 버팀목 1개 이상의 높이만큼 인양한 경우 감점 * 목표치까지 인양 후 차량이 버팀목에 살짝 걸칠 수 있도록 에어백을 낮추지 않은 경우 감점 * 중량이 에어백으로 쏠려 장비가 이탈한 경우 감점 * 에어백 결합호스의 꺾임이 있을 경우 감점 * 버팀목 “井자형”으로 반듯하게 쌓아 올리지 않거나 버팀목의 끝이 5~10cm 넘도록 겹치지 않는 등 고정상태가 불량한 경우 * 중량이 버팀목으로 쏠려 장비가 이탈한 경우 * 최상단 버팀목이 하부 프레임과 평행한 경우 감점 * 차량 하부에 손 등 신체 일부가 들어가는 경우 감점 * 에어백의 위치가 올바르게 놓이지 않거나 차량이 구조대상자의 방향으로 기운 경우 실격 * 버팀목을 쌓을 때 버팀목의 옆면을 파지하지 않고 뒷면에 손이 올라오도록 파지 하는 경우 매회 10점 감점, 해당 진행단계(50점) 초과 시 0점 처리		-10 -10 -10 -10 수량
공 통	※ 장비운용이 불가 또는 잘못된 사용으로 인한 장비 파손(파손예상)이 된 경우 실격 ※ 각 항목의 감점이 항목점수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항목점수 0점(추가 감점 불가능) ※ 평가 중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행동 및 안전에 관한 사항 위반 시 실격		총감점

평가 결과	100	
제한시간 : 10분 (현장확인 → 에어백운용 및 구조)	합 격	불합격
최종 평가기록 : 분 초		

